

# 통일평화연구원

## 1. 사업 배경

### □ 개요

- 사업명: 『평화학 개론』 교과서 집필 및 출판 사업
- 기관명: 통일평화연구원

### □ 추진 배경 및 목적

#### ○ 추진배경

- 서울대학교는 지난 2016년 제1기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의 참여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한반도의 미래를 짊어질 실천적 평화인재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서울대학교는 또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기간 동안 「평화인문학 사업」(한국연구재단)을 수행하면서 통일학, 평화학의 연구 및 교육 역량을 부단히 제고해 왔음
- 더 나아가 2019년 12월 서울대학교를 세계적 수준의 통일평화 연구·교육 기관으로 도약시키고자 통일평화연구원과 약 15개 학과/부에 소속된 약 25명의 교원을 조직화하여 「The SNU OLIVE Initiative for Peace Research」라는 초학제적 평화학 연구 플랫폼을 구축함
- 통일평화연구원은 이러한 지난 10여년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초학제적, 융·복합적 통일평화 교육 모델을 개발·운영함과 동시에 가칭 ‘평화학’ 연계전공 신설 등을 통해 통일평화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통일평화 교육을 구현함으로써 평화교육의 아시아 허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함

#### ○ 목적

- 본 사업은 서울대학교가 세계적 수준의 평화학 연구·교육 기관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하고자 서울대학교 재직 교수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평화학 입문에 필요한 기본적 내용을 다루는 교과서를 집필하고 출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업의 결과물은 2021년 중으로 책으로 출판될 예정이며 「평화학 개론」 교과목이 개설될 경우 수업 교재로 활용될 예정임

## 2. 사업 내용

### □ 사업 추진 내용

- 『평화학 개론』 원고 집필
  - (내용 입력) 본 사업에 참여하는 9명의 연구자들은 각각 다음의 세부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초고를 집필함

| 연구주제                  | 연구진                  |
|-----------------------|----------------------|
| 평화학의 현황과 과제           | 김성철<br>(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 전쟁이란 무엇인가?            | 신성호<br>(서울대 국제대학원)   |
| 근대 평화사상: 홉스에서 칸트까지    | 김범수<br>(서울대 자유전공학부)  |
| 현대 평화사상: 정의의 전쟁 이론    | 박성우<br>(서울대 정치외교학부)  |
| 안보와 평화 구축             | 전재성<br>(서울대 정치외교학부)  |
| 국제 분쟁 해결: 해양 문제를 중심으로 | 구민교<br>(서울대 행정대학원)   |
| 환경과 평화                | 홍중호<br>(서울대 환경대학원)   |
| 과학기술과 평화: 예방 의학을 중심으로 | 황승식<br>(서울대 보건대학원)   |
| 인도적 개입과 평화 구축         | 김태균<br>(서울대 국제대학원)   |

### □ 초고 집필 결과

#### ○ 평화학의 현황과 과제 (김성철)

##### ○ 평화란 무엇인가, 평화 및 연관용어

전쟁-평화를 대척적으로 설정하고 평화는 전쟁없는 질서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파스 로마나, 파스 브리카니카, 파스 시니카 등 개념이 그러하다. 평화를 이렇게 전쟁 부재, 또는 질서라고 보는 것은 협소한 의미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평화를 정의하는데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 즉 평화부재 peacelessness (Dieter Senghaas의 용어) 상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또 갈등 conflict은 다양한 형태의 광범위한 비평화상태를 의미한다. 무력충돌 및 비물리적 충돌을 모두 포괄한다. 그러나 비물리적 충돌인 경우, 그 갈등이 폭력이 아닌 방식으로 해소되는 공간이 존재하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이런 논의는 비판적 평화학의 영향하의 신좌파 논의에서 잘 드러난다.

평화는 폭력의 대척 개념으로 설정하고 평화를 정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요한 갈통의 기여가 크다, 그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하고, 폭력을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우리가 평화를 폭력이라는 대척 개념을 통해 이해하더라도, 폭력 현상의 다양한 측면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셈이다. 살상 이외에도 공포, 위협, 욕구부족 등이 있다.

평화의 관련 개념으로서 안보는 평화에 도달하는 수단이다. 안보는 과거와 달리 국가 안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990년대 초 인간안보 개념의 등장 이후 안보 개념이 광의적 사용되기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안보가 이제 국가의 전유 개념이 아니게 되었다

#### ○ 평화학이란

평화학 peace studies 혹은 peace research는 폭력 또는 갈등의 원인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평화학은 분명 학제적 학문으로서, 사회과학, 인문학, 법학, 예술 등의 다양한 분과학문의 결합이다. (박명규, “지금 왜 평화인문학인가”)

평화학은 사실과 경험에 기초하는 동시에 가치지향적 성격을 지닌다. 평화학은 규범, 가치의 실현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생명, 공정처럼 평화를 위해 자명한 원리 이외에도 신뢰, 대화, 관용 등 경험적으로 평화와 밀접한 관계가 확인된 가치들을 지향한다.

평화학이 실천practice 자체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실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실천으로서의 평화운동 자체가 연구 대상이 된다. 평화운동은 폭력 또는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려는 집단 행동이며, 그 원인에 대한 탐구와 운동 양상의 지속과 변화는 연구의 대상이다. 또한 평화학은 직간접적으로 원인 제거를 위한 처방을 제공하기도 하며, 연구자가 실행을 위해 운동에 참여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평화학은 흔히 비판적 성격을 띤다. 비판적 평화학 critical peace studies은 평화학의 한 분야라기 보다는 평화학의 본질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평화학의 탐구 대상은 폭력의 행위주체인 인간, 집단, 국가, 국제조직 뿐만 아니라 폭력 현상을 초래하는 구조, 문화, 기술, 사건 등이다. 또한 실천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 정부 정책 및 제도, 국제 협약도 연구대상이 된다. 개인간의 분쟁 그 자체는 연구 대상이 아니지만, 그것이 집단적 이해갈등(억압, 차별, 공포, 위협)의 결과라면 역시 분석 대상이 된다.

표 1. 평화학의 기원, 진화, 발전

|         |                                                        |                                                     |                          |
|---------|--------------------------------------------------------|-----------------------------------------------------|--------------------------|
|         | <b>평화학의 사상적 기원</b>                                     |                                                     |                          |
| 사상가     | 임마누엘 칸트                                                | 레프 톨스토이                                             | 칼 마르크스                   |
| 위협      | 국가간 전쟁                                                 | 교회, 국가, 사유제                                         | 경제구조 (국가는 착취수단)          |
| 주제      | 영구적 평화 조건 (공화제, 국가간 연방)                                | 절대적 비폭력주의 (국가 착취기구에 불참, 저항)                         | 혁명, 계급투쟁                 |
| 영향      | 국제연맹, UN, 국제기구 협약                                      | 비폭력주의                                               | 비관적 평화학                  |
|         | <b>비판적 평화학의 진화 (20세기)</b>                              |                                                     |                          |
| 인식론적 배경 | 합리성, 자유주의                                              | “적극적 평화”                                            | 신좌파, 후기구조주의              |
| 이론가     | 케네스 보울딩, 칼 도이치, 디터 쟁하스, 마이클 도일                         | 요한 갈통                                               | 랄프 밀리반드, 얼네스토 라클로, 샬탈 무프 |
| 위협      | 1,2차세계대전, 한국전, 월남전, 핵무기                                | 부정의, 빈곤, 불평등, 제국주의종속                                | 산업사회의 다원적 적대             |
| 주제      | 국가안보, (핵)군축·협약, 억제, 전쟁범죄, 공동안보, 민주평화론                  | 구조적, 문화적 폭력                                         | 신사회운동, 사회주의 페미니즘         |
|         | <b>복합적 평화학의 발전 (냉전후)</b>                               |                                                     |                          |
| 인식론적 배경 | 구성주의                                                   | “인간안보” (인도주의)                                       | 생태사회주의, “성찰적 근대화론”       |
| 이론가     | UN, 사무엘 헌팅턴, 엠마누엘 아틀러, 아미타브 아차라                        | UN, 노르웨이, Lloyd Axworthy, Mahbub ul Haq-Amartya Sen | 울리히 벡, 폴 벌케트, 유발 하라리     |
| 위협      | 안보공동체, 핵확산, 주권의 책임성, 내전, 비국가폭력주체, 사이버                  | 개발, 인종, 젠더, 난민 등 비전통 위협                             | 원자력, 리스크, 기술, 생태파괴       |
| 주제      | 비핵지대화, PKO, 영토-역사분쟁, 전쟁범죄, R2P, 반테러전, 사이버안보·주권, 하이브리드전 | SDGs, 인도주의-개발-평화 넥서스, 이행정의                          | 기후변화, 재난, 탈인간화           |
| 도전과 과제  | 전쟁개념, 안보개념, 주권개념                                       | 인간안보-개발-생태 관계                                       | 지구적 재난, 지능-의식 이원화        |

이상에서와 같이 평화학은 학문적 기반이나 연구대상에 있어서 매우 광범위하다. 이런 광범위성으로 인해 평화학이 별개의 학문discipline이 될 것인가에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평화학이 독자적인 방법론과 인식론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방법론이야 사회과학 전반에 확산된 양적, 질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하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타 분과학문로부터 인식론의 크게 영향 받고 있는 현실인바, 인식론에 관한 논의가 더 진척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식론은 크게 1. 객관적 (합리성), 2 주관적 (“규범”이 관여, 공포 위협의 “인지심리”, 공포 위협 형성하는 “관계”), 3 담론적 discursive, intersubjective process (Buzan and Hansen,

32, 59)으로 나누어진다.

#### ○ 평화학의 발전 과정

표 1에서와 같이, 세 부류가 지속되면서도 진화, 심화하는 현상을 보인다. 부류들이 경쟁이라기 보다는 상호 영향을 주고 융합되는 현상을 보인다.

사상적 기원에서 “국가,” “인간,” “구조”가 평화 또는 폭력의 주체이며, 이를 대표하는 사상가로 칸트, 톨스토이, 마르크스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 국가 부류에서는 국가와 국가주권이 지속적으로 중심 주제가 되고 있다. 냉전 전후를 막론하고 국가간 안보협력을 논하면서 공동체의 개념이 주요하게 다루어졌고, 체제의 속성(레짐) 또한 중요 주제로 남아 있다. 냉전후, 국가간 전쟁 보다는 내전의 증가에 따라 인종청소, 제노사이드, 반인도적 범죄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또 고전적 의미에서 외교, 영토의 주권 이외에도 주권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사이버주권, 핵주권 등이 발전하였다.

두 번째의 인간을 중심에 두는 부류는 냉전 종식 이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적극적인 평화, 구조적 폭력 등의 개념들이 등장한 이후 보다 체계적이 되었다. 오늘날 인도주의에 기반 개념인 인간안보가 발전하면서 개발, 생태와 연관되어 논의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저발전 상황에서 인간개발의 인식이 고조되었다.

세 번째 부류에서와 같이, 진보적 사상과 이론이 평화연구가 학으로서의 진화와 복합화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세기의 비판적 평화학의 발전이 예라고 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향의 흐름(화살표)이 좌향적인 성향을 띠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생태사회주의 및 위험사회론은 생태파괴, 복합재난, 탈인간화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였다.

#### ○ 평화학의 복합화

복합화란 복합성이 가해지는 과정을 뜻하며, 복합성은 개방성, 연계성, 비선형성 등으로 설명된다.

폭력과 평화에 관여하는—정확히 말하면 이를 설명하는—다양한 요소들이 독립적이거나 고립적이지 않다. 이들 요소들의 서로 연계되어 제약하거나 부추기며 상호작용한다.

또한 폭력과 평화의 변화과정은 투입에 비례한 일정한 결과를 예측하기 용이하지 않는, 즉 불확실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복합화는 여러 요소가 합쳐져 있다는 단순한 의미부터 시작해 인간의 의도와 연구자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초래되는 상황까지를 말한다. 재난과 기술이 복합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오늘날의 재난은 자연변화, 인간실수, 사회구조, 기술충돌 등의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과거 인간이 겪었던 홍수, 가뭄 같은 자연재해는 이제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 단계에 접었으나, 기후변화는 단순한 자연현상의 변화가 아니라 산업사회의 생산양식, 국내정치 및 국제정치, 기술 등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이에 따른 피해는 소수자의 소외, 집단갈등, 공동체 복원성 상실 등 행정적, 경제적 자원의 투입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많다.

냉전후 평화학은 복합화에 대한 인식으로 논의 주제의 급속히 다양화를 촉진하였는바, 여기서 UN의 역할이 눈에 띈다. UN이 인간안보, 보호책임 등의 개념화 및 실천에 관여한 점이 냉전기의 부진했던 역할과 대조된다. 또 UN은 비핵지대 (동남아, 중앙아, 몽골), PKO, SDGs, 인도주의-개발-평화 넥서스 등에서 국가, 비정부기구 등과 다양한 안보 및 개발 문제들에 관여하였다. 연구자들의 이론 논의뿐만 아니라 참여는 20세기의 적극적 평화 개념의 실천적 의미를 만개하게 하였다. (중략)

#### ○ 전쟁이란 무엇인가(전쟁론과 한반도 평화, 신성호)

## 1. 클라우제비츠와 손자의 전쟁론

2020년은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70주년이다. 남북간 동족상잔의 비극은 물론 미중을 비롯한 17개 유엔 참전국이 3년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맺은 것은 평화협정이 아닌 정전 협정이었다. 그 사이 한국 전쟁의 원인이 된 동서냉전이 1990년대 초 종식되고 공산주의가 몰락한 후 또 30여 년이 흘렀지만, 한국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국 전쟁에 관해 그동안 많은 연구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대부분 한국인은 평화로운 일요일 새벽에 북한의 김일성이 탱크를 앞세운 무력남침 전쟁으로 남아 있다. 반면에 북한이나 중국은 미 제국주의에 항거한 자랑스러운 전쟁으로 정의한다. 이 두 시각에는 전쟁의 근본 책임에 대한 타협하기 어려운 입장이 존재한다. 1953년 사실상의 무승부로 타협한 정전 협정 이후 지금까지 평화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이유이다. 한국 전쟁의 또 다른 주역인 미국인들에게는 아직도 너무나 생소하고 머나먼 이국땅에서 갑자기 벌어진 잊혀진 전쟁이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에서 한국 전쟁을 마무리 짓고 평화협정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왜 지금 평화협정인가, 어떻게 한국 전쟁을 끝낼 것인가의 문제는 그 책임 여부나 이념논쟁을 넘어서 전쟁의 기본적 성격과 이유에 대한 기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이번 장에서는 전쟁의 본질과 수행에 대해 가장 권위적인 이론가로 알려진 클라우제비츠와 손자의 전쟁이론을 통해 한국 전쟁의 성격과 그 진행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그리고 궁극적으로 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종결이 어려운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2) 좋은 전쟁은 없다, 쉬운 전쟁은 더욱 어렵다: 클라우제비츠와 손자

### 1) 왜 싸우는지, 목표를 잘 설정해라!: 전쟁은 정치다

인간은 왜 파괴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일까? 인간 사회에서 전쟁은 어떠한 의미와 역할을 가지는가? 전쟁의 본질과 그 역할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전쟁을 어떻게 하면 잘 수행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확고한, 그리고 빠른 승리를 이끌어 낼 것인가의 질문에 연결된다. 이에 대한 대답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책이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 1780-1831)의 전쟁론(on War)이다. 이론가 이전에 어릴때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으로서 평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의 실제적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그의 저서는 과연 전쟁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해할지에 관하여 최초로 과학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한 연구로 인정된다.<sup>1)</sup> 18세기 유럽의 신흥강국으로 부상한 푸러시아 태생으로 12세에 견습생으로 군에 입대하여 이후 25년을 당시 유럽을 휩쓴 나폴레옹 전쟁에 참여한다. 전장에서 은퇴 후 38세의 나이에 사관학교 교장으로 임명된 후 10년이 넘게 전쟁에 관한 가장 체계적이고 방대한 연구를 하였다. 집필 중 갑자기 병사하면서 미완성으로 남은 전쟁론은 사망 1년 후 부인, 마리아 클라우제비츠가 원고를 정리하여 1832년에 출간된다. 군인의 입장에서 시작된 클라우제비츠의 연구는 결국 ‘전쟁은 정치 행위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전쟁이 단순한 살상이나 파괴를 위한 무의미한 폭력의 사용이 아니라 “군사적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 (continuation of politics by military means)”이라는 것이다.

전쟁이 언뜻 보기에는 상대방을 완전히 물리적으로 제압 또는 제거를 하는 행위로 (절대 전쟁; absolute war) 으로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현실에서 실제 전쟁은 상대방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

1) Michael Howard, On War, Introduction, viii.

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항상 특정한 정치적 목표와 상황 속에서 일어난다. 특히 모든 전쟁의 수행과 그 진행은 현실의 여러 제약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벽하고 절대적인 승리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제한적인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 타협하는 행위 (제한 전쟁; limited war)라는 결론을 내린다. 현실의 전쟁에는 제한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전쟁의 목표가 상대방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특정한 요구를 상대방에게 관철시키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인류 역사상 한 전쟁에서 일부 부족이나 도시를 무자비하게 말살시킨 사례도 있다. 13세기 몽고군이 이슬람과 유럽 정벌시에 당시 아비시드 왕조의 바그다드 수도를 수십만의 시민과 함께을 무자비하게 파괴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도 몽고의 무자비한 살상행위는 여타 유럽과 이슬람 지역에 몽고군에 대한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분석된다. 결국 전쟁의 목표는 상대방에게 특정한 정치적, 경제적 목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기 상대방 자체의 말살이나 체제의 붕괴를 원한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것이다.

둘째, 전쟁의 목적이 적의 완전한 제거와 파괴에 있지 않는 한 그 수단도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적군이나 적의 민간인을 완전히 말살하는 행위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실제 다음 전쟁법과 전쟁 윤리 편에서 살펴보겠지만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전쟁에서 무자비한 파괴나 살상은 비윤리적인 행위로 여겨졌다. 전시에도 필요 이상의 살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대와 문화에 상관 없는 인류 보편의 상식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더구나 전쟁은 항상 많은 위험과 부담을 수반한다. 아무리 강한 군대도 뜻밖에 상황에 의해 패전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누구에게나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큰 모험이며 따라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피하게 된다. 되도록 전쟁 없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상 먼저 평화적 대화나 외교를 통한 해결과 타협을 시도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전쟁 수행은 항상 내가 적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전쟁의 정치적 목표와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전쟁의 목표를 합리적으로 세우고 그 목표에 대한 냉철한 이성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전쟁이 가지는 폭력성과 불확실성(fog of war) 등으로 인해 실제 전쟁 수행을 이성적으로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전쟁의 지도자는 인간의 원초적 폭력, 증오와 같은 반이성적 감정의 영역, 도박성이나 개연성이 지배하는 전술 전략의 영역, 그리고 국가의 정책목표를 이루려는 이성적 영역의 3요소가 종합된 전쟁의 정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쟁의 계획을 수립하고 신중하게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은 근대민족국가의 성립 이후 나타난 국가 중심의 근대전쟁을 이해하는 중요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 제한전(limited war)과 총력전(total war)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이론과 실재를 분석하면서, 근대전쟁은 상대방에 대한 폭력이나 살상 그 자체보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는 제한전의 모습을 보인다고 진단한다. 어느 한 상대가 완전히 제압될 때까지 계속되는 두 사람간의 결투와 달리 국가 간 전쟁은 특정한 전쟁의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 전쟁이 끝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18, 19세기 유럽의 전쟁은 많은 경우 국가 간 이해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수의 전문적 군대에 의해 짧은 기간의 전투를 통해 승부가 결정되곤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의 열기 속에 나폴레옹이 민간대중을 징집한 대규모의 국민군대가 전쟁을 치루면서 전쟁의 규모와 성격은 국가의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총력전의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무기기술과 전략, 전술의 진화로 점차 전후방의 구분이 없어지고

대규모의 민간인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초래하게 되자 전쟁은 전 국민 개개인의 직접적인 관심사로 떠올랐고 그 속에서 합리적 정치이익 보다는 복수의 감정이 지배하는 모습을 보인다. 1차 대전은 유럽 각국이 대규모의 국민군대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제한된 정치적 목표보다는 전 국민이 전쟁수행에 동원되어 서로에게 비이성적 파괴와 무조건의 항복을 추구하는 총력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1천9백만에 달하는 사상자를 낸 1차대전의 비극에 놀란 유럽과 미국은 전쟁을 아예 금지하는 조약을 맺거나 각종 군축협약을 통해 또다른 참화를 막고자 하였다. 그러나 20년만에 다시 5천만명이 넘는 사상사를 낸 2차대전이 벌어진다. 핵폭탄으로 상징되는 가공할 파괴력의 각종 신무기에 의해 전후방과 전투원과 민간인의 구분이 없는 총력전의 성격은 더욱 강화되었고 독일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종결된다. 양차 대전의 결과는 서구 사회에 기술의 발달로 근대 이후 전쟁이 본래의 의도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나게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각성하는 극적인 계기가 된다. 특히 2차 대전말에 사용된 핵무기는 어떤 이유로도 핵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인식을 인류사회에 심어주었다. 이후 아직은 강대국간의 총력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지속되고 있다. 혹자는 이를 대신 제한전 시대의 부활로 해석하기도 한다.

## 2) 올바른 목표 설정을 위해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한다: 100번을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

전쟁의 정치성과 제한성에 대한 클라우제비츠의 명제는 그보다 2천5백 년 전인 기원전 6세기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오나라의 전략가인 손무의 손자병법에도 나타난다. 손자는 전쟁에서 최상의 승리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미리 이기고 싸우는 것이라고 설파한다. 13편으로 구성된 간결한 책의 총론격인 제1편 시계, 제2편 작전, 제3편 모공을 통해 손자는 먼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설명한다. 대신 전쟁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책의 제일 첫머리인 시계의 첫 문장에서 손자는 전쟁은 국가의 큰대사라고 정의한다. 사람이 죽고 살고, 나라의 존속과 멸망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우 조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흔히 손자병법의 가장 유명한 명제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전 100승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원문과는 다른 오해이다. 원문에는 “백전불패”가 아니라 “백전불태”이다. 100번 싸워 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태로워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손자는 공세에 관한 장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적을 모르고 나만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질 것이며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고 경고한다. 싸울지 말지를 그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줄 알아야 나를 지키고 위태롭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나와 적에 대해 잘 알아도 모든 전쟁에서 지지 않거나 이기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대신 내가 적에 비해 약하다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면 무모한 전쟁을 일으키기보다 전쟁을 피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 위태로운 상태를 자초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손자는 백 번 싸워서 백 번 이기는 것보다 전쟁하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 중의 최선이라고 가르친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이 가장 훌륭한 전략이라는 손자의 명제는 전쟁은 정치적 목표를 위한 수단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명제를 가장 극적으로 설명한다. 손자병법의 핵심주제는 어떻게 하면 전쟁 자체를 피하고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이다. 손자는 전쟁 이전에 전쟁을 일으킬 상황을 만들지 않고, 전쟁을 하려면 전쟁의 명확한 목표와 그로 인한 분명한 이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상대방의 전력과 나의 전력을 파악해서 승산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한다. 전쟁을 결심해도 여전히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된다면 최대한 빠르고 피해 없는 승리를 거두는 것이 차선의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도 손

자는 군비로 국가 경제가 피폐해지는 것을 경고한다. 전쟁은 필연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막대한 재정 지출과 인명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정작 전쟁에서 승리해도 실제로 얻은 것이 없다면 이는 최악의 승리이다. 전쟁은 파괴와 살상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싸우지 않고, 즉 파괴와 살상 없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최고의 승리이다.

손자의 전쟁론은 결국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 즉 전멸시키는 것이 목표인 가상의 절대 전쟁과 구분하여 정치적 목적을 위한 현실 세계의 제한 전쟁론을 펼친 클라우제비츠와 전쟁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같다. 이러한 전쟁의 정치성은 국가안보전략의 수립에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후에 안보론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국가안보전략의 수립은 결국 국가나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해에서 출발하고 이는 곧 전쟁의 정치적인 목표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또한 국가안보전략, 혹은 전쟁계획의 수립이나 그 수행이 전문적인 군인과 정치지도자 중 누구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는지의 실질적인 질문과도 연결된다.

### 3)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전쟁의 삼위일체 (trinity of war)

손자가 전쟁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라고 주장한 이유는 전쟁을 제대로 싸우는 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다. 클라우제비츠는 3위 일체의 명제를 통해 이를 설명한다. 전쟁의 수행은 세 주체에 의해 3가지 특징이 상호 작용하며 나타난다고 분석한다. 먼저 전쟁의 3 주체는 일반 국민, 장수와 병사, 그리고 정부 혹은 정치지도자로 구분된다. 전쟁의 수행에는 이들 세 주체가 상호 작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쟁의 3요소, 혹은 ‘전쟁의 삼위일체 (trinity of war)’가 나타난다. 첫째는 전쟁의 본질적 폭력성과 관련한 증오 및 적개심이 작용하는 감정과 열정의 요소이다. 둘째는 감정과는 별개의 개연성과 운이 작동하는 요소이다. 셋째는 전쟁이 결국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합리적 판단, 순수한 지혜, 혹은 이성적 요소이다. (중략)

## ○ 근대 평화사상: 홉스에서 칸트까지(김범수)

### 1. 들어가며

유럽의 “30년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1648년 체결된 웨스트팔리아(Westphalia) 조약은 개별 국가의 군주에게 자국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절대적,” “배타적” 주권에 근거한 근대 국제질서의 서막을 열었다. 소위 웨스트팔리아 체제로 불리는 이러한 국제질서 하에서 개별 국가는 실질적으로는 외부의 간섭 특히 강대국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영토 안에서 외부의 간섭 없이 국내 정치 문제를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 배타적 주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받았다.<sup>2)</sup> 반면 중세 시기 국가 상위에 존재하던 교회 또는 제국의 영향력은 부정되었고 국제 관계는 무정부상태로 정의되었다.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정당화하고 있는 정치 질서, 즉 국내적으로는 국가의 절대적, 배타적 주권을 인정하고 국제적으로는 국가 상위의 어떠한 권력체도 부정하는, 안과 밖을 구분하는 이원론적 정치 질서는 이러한 웨스트팔리아 체제를 기반으로 한 정치 질서였다.

홉스의 평화론은 이처럼 안과 밖을 구분하는 근대의 이원론적 정치질서를 바탕으로 안에서는 평화를 추구하고 밖에서는 전쟁을 정당화한다. 홉스에 의하면 국가가 없는 자연상태에서 개인들은 타인의 생명을 포함하여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자신의 의도대로 행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2) Stephen D. Krasner, *Sovereignty: Organized Hypocris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pp. 20-24.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동시에 공권력(common power)이 부재한 상황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에 놓여 있으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에 휩싸여 있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무제한적인 권리를 누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타인의 공격으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자연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개인들은 자연상태에서 자신들이 누리던 무제한적인 권리를 제3자인 통치자에게 양도하고, 통치자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다른 개인들과 사회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홉스는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계약의 결과 탄생한 국가 권력은, 즉 주권은, 내부적으로는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을 비롯한 국가 내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며, 외부적으로는 어떠한 상위 권력체도 부정한다고 홉스는 주장한다.<sup>3)</sup> 홉스에 의하면 “모든 국가는 ... [대내적으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것을 [자신의 의도대로] 행할 수 있는 절대적 자유(absolute liberty)를 갖는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국가들 사이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무정부상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sup>4)</sup>

이처럼 홉스가 묘사하는 근대 정치질서는 안과 밖에서 국가의 권력 독점에 근거한 한편으로는 외부 간섭으로부터 개별 국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내적 평화를 수립하는데 기여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행위를 규제할 상위 권력체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국가의 부당한 폭력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sup>5)</sup> 이러한 이유로 홉스 이후 많은 사상가들이 국제관계를 전쟁상태로 규정하는 홉스의 논의를 뛰어넘고자 시도했고 이는 다양한 평화사상으로 이어졌다. 본 글에서는 이처럼 홉스 이후 등장한 다양한 평화사상을 그로티우스, 생피에르 신부, 칸트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 2. 그로티우스의 평화사상: 정의로운 전쟁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그로티우스(Hugo Grotius), 푸펜도르프(Samuel von Pufendorf), 바텔(Emer de Vattel) 등 17세기, 18세기 유럽의 국제법 학자들은 보편적으로 통용 가능한 국제법(*jus gentium*)을 통해 국가 주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부당한 폭력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실제로 그로티우스는 1625년 출간한 그의 저서 『전쟁과 평화의 법 *De Jure Belli ac Pacis Libri Tres*』에서 국가 주권과 전쟁의 정당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은 채 어떤 전쟁이 법적 도덕적으로 정당한 전쟁인지 구분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쟁”의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전쟁의 야만성을 제어하고자 하였다.<sup>6)</sup> 칸트는 그러나 「영원한 평화」에서 이들 세 명의 국제법 학자들을 “괴로움을 주는 달갑지 않은 위로자들(leidige Tröster; sorry comforters)”로 호칭하며 이들의 논리에는 국가를 규제하는 어떠한 외적 법적 장치도 없다고 비판한다. 칸트에 의하면 “철학적으로 또는 외교적으로 표현된 그들의 법전은 아무런 법적 효력(Kraft)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가질 수조차 없다. 왜냐하면 ... 국가들은 하나의 공동의 외적 강제(gemeinschaftlichen äußeren Zwange)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법전은] 언제나 전쟁 도발의 정당화를 위해 충실히 인용되고 있기 때문이다.”<sup>7)</sup> 요컨대 칸트는 이들의 주장이 단지 국가들 사이 전쟁을 규제하는데 초점을 맞출 뿐 국제 관계에서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상태를 구현하는 방안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비판한다.<sup>8)</sup>

3) Thomas Hobbes, *Leviathan* (Indianapolis: Hackett, 1994), pp. 74-88, 110-118.

4) Hobbes (1994), p. 140.

5) David Held, “Sovereignty, National Politics, and the Global System,” in his *Political Theory and the Modern Stat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pp. 221-236.

6) 김준석, “위기의 국제정치사상: 휴고 그로티우스의 정전론,” 『세계정치』 25 (2016), pp. 96-105.

7) Kant, 「Frieden」, p. 210 ; 「Peace」, p. 103.

8) Brown (2005), pp. 498-499.

### 3. 생피에르 신부의 평화사상: 강제력을 갖춘 국제국가

한편 이들과 달리 생피에르 신부(Abbé de Saint-Pierre)와 루소(Jean Jacques Rousseau)는 법적 강제력을 갖춘 국가들의 연합을 통해 법이 지배하는 국제 관계를 구현함으로써 평화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생피에르 신부는 1712년 처음 출간한 『유럽에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계획 *Projet pour Rendre la Paix Perpétuelle en Europe*』에서 당시 유럽에 만연한 전쟁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은 조약이나 세력균형으로는 불충분하며 개별 국가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영구적으로 갖춘 “유럽연방연합(European federal union)”을 통해 약소국을 보호함으로써 평화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9)</sup> 비슷한 맥락에서 루소 또한 생피에르 신부의 주장을 요약·비판하는 『영구 평화 발췌 *Extrait du Paix Perpétuelle*』와 『영구 평화 비판 *Jugement du Paix Perpétuelle*』이라는 글을 통해 국제 관계에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갖춘 연방으로서 국가연합의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루소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국가연합이 “유럽의 모든 주요 강대국을 회원으로 포함해야 하며, 모든 회원국을 구속할 수 있는 법률과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기관을 가져야 하며, 개별 국가들에게 공동 결의안에 복종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져야 하며 ... 개별 국가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탈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힘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루소는 이처럼 강제력을 갖춘 국가연합을 통해 개별 국가의 행동을 규제함으로써 국제 관계에 평화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sup>10)</sup>

### 4. 칸트의 평화사상: 자유로운 평화연방

칸트(Immanuel Kant)는 1795년 출판한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철학적 구상」<sup>11)</sup>이라는 짧은 글에서 국제 관계에서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상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Föderalism freier Staaten; Federation of free states)”를 통해 국제적 차원에서 “공법(öffentlichen Rechts; public laws)”이 작동하는 “법적인/법이 지배하는 상태(rechtlicher Zustand)”를 “정초(gestiftet werden; formally institute)”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2)</sup> 칸트에 의하면 국가들이 평화상태를 구현하는 방안으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개인들이 “원초적 계약(ursprüngliche Kontrakt; original contract)”을 통해 자연상태에서 향유하던 “야만적이고 무법

9) Patrick Riley, “The Abbé de St. Pierre and Voltaire on Perpetual Peace in Europe,” *World Affairs* 137-3 (Winter 1974), pp. 186-187.

10) Elizabeth York, *Leagues of Nations* (London: Swarthmore Press, 1919), p. 211; Patrick Riley, “Rousseau as a Theorist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Federalism,” *Publius* 3-1 (1973), p. 13에서 재인용. 루소는 그러나 국가연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극히 비판적”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용민, “루소의 국제정치관과 평화사상,” 『국가전략』 제12권 1호 (2006), pp. 8-9 참조.

11)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칸트의 저작 「세계시민의 의도에서 바라 본 보편사의 이념 Idee zu einer allgemeinen Geschichte in weltbürgerliche Absicht (1784)」(이하에서는 「보편사의 이념」 또는 「Idee」로 약칭), 「속설에 관하여: ‘이론에서는 옳을지 모르지만 실천에서는 유용하지 않은’ Über den Gemeinspruch: ‘Das mag in der Theorie richtig sein, taugt aber nicht für die Praxis’ (1792)」(이하에서는 「이론과 실천」 또는 「Theorie und Praxis」로 약칭),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철학적 구상 Zum ewigen Frieden: Ein philosophischer Entwurf (1795)」(이하에서는 「영원한 평화」 또는 「Frieden」으로 약칭), 「윤리형이상학 Die Metaphysik der Sitten (1797)」(이하에서는 「윤리형이상학」 또는 「Metaphysik」으로 약칭)의 독일어 텍스트는 바이세델(W. Weischedel)이 편집하여 1977년 주르캄프(Suhrkamp) 출판사에서 출판한 칸트 전집 *Werkausgabe* 제8권 *Die Metaphysik der Sitten*과 제11권 *Schriften zur Anthropologie, Geschichtsphilosophie, Politik und Pädagogik I*을 기준으로 인용하였다. 「Idee」, 「Theorie und Praxis」, 「Frieden」의 페이지는 *Werkausgabe* 제11권에서 인용한 페이지이며 「Metaphysik」의 페이지는 제8권의 인용 페이지이다. 또한 위 저작의 영역본은 라이스(H. Reiss)가 편집하여 1970년 캠브리지대학출판사에서 출판한 *Kant: Political Writings*을 기준으로 인용하였으며 「Idea」, 「Theory and Practice」, 「Peace」, 「Metaphysics」 뒤에 숫자로 인용 페이지를 표시하였다. 한글 번역은 위 독일어 텍스트와 영어 텍스트에 기반 하여 백종현이 번역한 『영원한 평화』(서울: 아카넷, 2013)와 『윤리형이상학』(서울: 아카넷, 2012)을 참고로 필자가 직접 번역하였음을 밝혀둔다.

12) Kant, 「Frieden」, pp. 203, 209; 「Peace」, pp. 98, 102.

적 자유(wilde gesetzlose Freiheit)”를 포기하고 대신 “공법적 강제력(öffentlich gesetzlichen Zwange)”을 갖춘 국가를 수립하여 국가의 법적 통제에 복종함으로써 평화상태를 구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적 차원에서 개별 국가가 자신들의 자유를 포기하고 대신 공법적 강제력을 갖춘 “국제국가(Völkerstaat; international state)”를 수립하여 평화상태를 구현하는 방안이다.<sup>13)</sup> 칸트는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첫째, 통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법의 지배가 약화되고 결국 “보편왕국(Universalmonarchie)”과 같이 “영혼 없는 전체주의(seelenloser Despotism)”로 귀결될 수 있으며,<sup>14)</sup> 둘째, 개별 국가가 국제국가의 공법적 강제력 행사를 자유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여 원치 않기 때문에 국제국가 수립을 통한 평화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sup>15)</sup> 칸트는 대신 이러한 방안의 “소극적 대안(negative Surrogat)”으로 개별 국가의 자유와 양립 가능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느슨하게 조직된 “국제연방(Völkerbund; league of nations),” 즉 자유로운 국가들의 “평화연방(foedus pacificum; Friedensbund; pacific federation)”을 통해 국제 관계에 “국제법(Völkerrecht)”을 규범화함으로써 “영원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6)</sup>

이처럼 자유로운 평화연방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며 칸트는 강제력을 갖춘 국가연합을 통해 개별 국가의 행동을 규제하고 이를 통해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생피에르 신부와 루소의 평화 방

13) Kant, 「Frieden」, p. 212; 「Peace」, p. 105.

14) Kant, 「Frieden」, p. 225; 「Peace」, p. 113.

15) Kant, 「Theorie und Praxis」, pp. 171-172; 「Theory and Practice」, pp. 91-92.

16) Kant, 「Frieden」, pp. 211-213; 「Peace」, pp. 104-105. 칸트가 국제 관계에 평화상태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떠한 모델을 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해석이 분분하다. 실레로 불(Hedley Bull)은 그의 저서 *Anarchical Society*에서 칸트의 평화론은 단순히 국가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협력하는 것을 넘어 “국가 시스템을 전복하고 이를 세계시민사회로 대체(the overthrow of the system of states and its replacement by a cosmopolitan society)”하는 것을 추구했다고 주장한다. Hedley Bull, *Anarchical Socie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7), p. 25. 반면 일부 칸트 연구자들은 “세계공화국” 또는 “국가들의 국가”를 통한 평화가 칸트가 구상한 진정한 평화 구상이었다고 주장하며 칸트 평화론을 재해석하거나 수정한다. 실레로 비어드(Byrd)와 흐르슈카(Hruschka)는 칸트가 「영원한 평화」, 「이론과 실천」, 「윤리형이상학」 등의 저작에서 “법이 지배하는 국제관계(juridical state)”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는 세 가지 방안, 즉 1) “보편왕국(the universal monarchy)”을 통한 방안, 2) “국제국가(the state of nations)”를 통한 방안, 3) “국제연방(the league of nations)”을 통한 방안 가운데 칸트가 “이성에 부합하는 유일한 방안(the only way in accordance with reason)”으로 생각한 방안은 두 번째 방안, 즉 “국가들의 국가(the state of states)”로 “국제국가(Völkerstaat)”를 수립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강제력을 가진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방안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이러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에 법의 지배 구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the first step)”로 국가들의 연맹 또는 연방을 통한 평화 방안을 제시하였을 뿐이라고 칸트 평화론을 재해석한다. B. Sharon Byrd and Joachim Hruschka, “From the State of Nature to the Juridical State of States,” *Law and Philosophy* 27-6 (November 2008), pp. 631-635. 비슷한 맥락에서 회페(Höffe)는 칸트 평화론을 “칸트의 입장”에서 재해석하여 입법과 행정 이 분리된 “세계공화국”을 통한 평화가 칸트의 진정한 의도였다고 주장한다. 회페에 의하면 국내적 차원에서 입법과 행정 이 분리된 공화정을 통해 전체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며 평화상태를 구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 관계에서도 입법과 행정 이 분리된 “세계공화국”을 통해 칸트가 국제국가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영혼 없는 전체주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칸트 본래의 평화론에 충실한 국제적 평화상태를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Otfried Höffe, *Königliche Völker: Zu Kants kosmopolitischer Rechts und Friedenstheorie* (Frankfurt am Main: Suhrkamp, 2001). 회페와 마찬가지로 세계공화국을 통한 평화가 칸트의 진정한 의도였다고 해석하는 연구로는 Louis-Philippe Hodgson, “Realizing External Freedom: The Kantian Argument for a World State,” in Elizabeth Ellis, ed., *Kant's Political Theory: Interpretations and Applications* (University Park: Penn State University, 2012), pp. 101-134; Pierre Laberge, “Kant on Justice and the Law of Nations,” in D. Maple and T. Nardin, eds., *International Society: Diverse Ethical Perspectiv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pp. 82-102 등의 연구가 있다. 이러한 해석과 달리 캐벌라(Cavallar)는 칸트의 평화론을 단계론적으로 해석한다. 즉 칸트가 실천적, 경험적 이유로 “세계공화국” 대신 “국가들의 자유로운 연방”을 평화 방안으로 선호하긴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세계공화국”과 유사한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염두에 두었다고 주장한다. Georg Cavallar, “Kant's Society of Nations: Free Federation or World Republic?”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32-3 (1994), pp. 461-482. 한편 브라운(Brown)은 이러한 해석 상 논쟁에 대해 소개하며, 칸트가 1793년 이전 저술한 「보편사의 이념」, 「이론과 현실」 등의 저작에서는 “세계공화국”을 평화 방안으로 제시하였으나 1793년 이후 저술한 「영원한 평화」, 「윤리형이상학」 등의 저작에서는 이 방안을 폐기하고 대신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을 일관된 평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Garret W. Brown, “State Sovereignty, Federation and Kantian Cosmopolitanism,”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1-4 (2005), pp. 513-514.

안이 이론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으나 국가들이 그러한 강제력에 복종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칸트는 「이론과 현실」에서 “모든 개별 국가가 자발적으로 [국제국가의] 권력에 순응하고 [국제국가의] 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생피에르 신부나 루소의 이론에서는 잘 어울릴 수 있으나 실천을 위해서는 별 영향력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주장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sup>17)</sup>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칸트의 평화론은 국가 주권을 강조하며 국가 상위의 어떠한 법적 질서도 부정하는 홉스 식의 국제 질서를 뛰어넘고자 하지만 동시에 전쟁의 정당성을 인정한 채 국제법을 통해 전쟁의 야만성을 줄이고자 하는 그로티우스 식의 시도와 법적 강제력을 갖춘 국제기구를 통해 개별 국가의 행동을 규제함으로써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생피에르 신부와 루소 식의 시도에 대해 부정적이다. 칸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국제적 평화상태는 개별 국가의 절대적 주권과 전쟁의 권리를 인정하는 그로티우스 모델에 의해서도 또는 강제력을 갖춘 “국가들의 국가” 또는 국제국가를 주장하는 생피에르와 루소의 모델에 의해서도 수립될 수 없다. 브라운(Brown)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자의 모델은 국가의 행동을 규제하기에 너무 약하고 반면 후자의 모델은 개별 국가의 행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가운데 전제주의적인 부당한 모델이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sup>18)</sup> 이러한 이유로 칸트는 국제 관계에서 법이 지배하는 평화상태를 구현하는 방안으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느슨하게 조직된 국가들의 자발적 연방을 통해, 즉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연방에 가입하고 자발적으로 법을 따르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칸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방안은 전쟁의 정당성을 부정하지만 그렇다고 동시에 법적 강제력을 통해 개별 국가의 행동을 지나치게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별 국가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최선”의 평화 방안이다. (중략)

## ○ 현대 평화사상: 정의의 전쟁이론(현대 평화주의 이론 지형, 박성우)

### 1. 서론

일반적으로 평화주의는 전쟁을 반대하고 폭력을 거부하는 태도, 지향, 가치이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전쟁을 반대하고 폭력을 거부하는 것의 현실적인 양태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혹자는 평화주의가 온전히 지켜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방어를 위한 폭력조차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또 다른 이들은 자기 방어를 위한 폭력을 포함해서, 폭력의 정당한 사용을 평화주의에 포함시킨다. 어떤 이들은 평화를 위한 전쟁을 평화주의로 정당화시키기도 한다. 평화주의는 이처럼 기본적 이념에서부터 상이한 이해를 갖고 있다. 이러한 상이한 이해의 기저에는 평화주의를 둘러싼 두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무엇을 평화로 규정하느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평화주의는 평화의 상태 자체를 중시하느냐, 혹은 평화 만들기(peace-making)를 중시하느냐는 것이다. 곧 설명하겠지만, 이 두 쟁점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

먼저, 평화주의가 규정하는 평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부터 살펴보자. 평화란 무엇인가? 평화는 분명 폭력의 부재를 의미한다. 단순히 폭력의 부재만을 바람직한 평화의 상태로 단정하기 어렵다. 예컨대, 악의 세력에 수동적인 자세로 복종하고, 예측되는 것을 평화의 상태로 간주하기 어렵다. 평화는 예측과 굴종의 상태일 수 없으며 자유로운 상태이다. 따라서 평화주의는 악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으며, 반대로 적극적으로 대항한다. 그런데 악의 세력에 대해 굴복하지 않고 대항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이견이 존재한다.

악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시적으로 폭력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가? 악을 제거하기 위한 폭력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가장 순수한 평화주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17) Kant, 「Theorie und Praxis」, pp. 171-172; 「Theory and Practice」, pp. 91-92.

18) Brown (2005), p. 500.

폭력의 사용을 거부한다. 따라서 그 대상이 악이라고 하더라도 폭력은 허용되지 않는다. 악에 대한 저항은 필요하지만, 그 수단이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신약성서의 산상수훈(마태5장39, 44; 누가6장27-30), 간디의 무저항 운동, 마틴 루터 킹의 비폭력주의가 이러한 순수한 평화주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순수한 평화주의가 궁극적으로 굴종과 예속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간디나 마틴 루터 킹은 가장 순수한 평화주의자는 무저항과 비폭력이 폭력의 사용을 통한 저항보다도 보다 효과적으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간디나 킹은 자신들의 신념을 실천했고 나름대로 결실을 얻었다. 그러나 이들의 성공이 곧바로 무저항과 비폭력의 평화주의만이 평화주의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진 못한다. 이들의 성공은 다른 역사적 우연의 요소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설득력 있는 반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혹자는 예속과 굴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자유로운 평화를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예외적으로 폭력의 사용이 허용되어야 한다. 예속된 민족의 속박을 풀고 진정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수행되어야 한다.

평화주의는 예속과 굴종의 상태가 아닌 자유로운 상태를 평화로 보는 데에는 의견을 일치하나, 이러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폭력이 허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것이 평화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첫 번째 쟁점이다.

평화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두 번째 쟁점은 평화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평화는 일시적으로 폭력의 사용이 중단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호전적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 단지 폭력의 사용을 유예했다고 해서 평화가 달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칸트는 단순히 폭력의 사용이 현실화 되지 않았다고 해서 평화가 달성됐다고 볼 없으며, “평화는 모든 적대감을 종식시키는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휴전 상태는 결코 평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진정한 평화는 이해득실을 산정해 잠정적으로 폭력의 사용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구적으로 폭력의 사용을 포기하는 것이다.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폭력의 사용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전쟁이나 폭력의 사용을 대외 정책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포기하는 안정적인 정당한 정치질서가 존재해야 한다. 다시 칸트의 생각을 빌어오자면, 자유민주 공화국이야말로 이러한 평화를 지향하는 정치질서이며, 이러한 정치질서가 늘어갈 때 세계는 안정적인 항구적인 평화상태를 달성할 수 있다.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정적인 자유민주 공화국을 거부하는 집단 혹은 정치체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평화 달성의 실효성과 관련된 논쟁이 이어지는 지점이다. 칸트의 평화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반자유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전쟁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세계평화달성하기 위해서 정당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평화를 위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계를 평화롭다고 할 수 있는가? 더구나 역사적으로 평화를 위한 전쟁은 마지막이 된 적이 없다.

평화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세 번째 쟁점은 평화의 범위와 질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 평화는 단순히 폭력의 부재만을 가르키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평화는 적어도 자유로운 상태이어야 하고, 적대감의 부재에 기반한 내적 안정성을 갖춰야 한다. 자유민주 공화국이라는 정치질서를 갖는 것도 평화의 한 요건이다. 그러나 평화는 질적으로 이보다 더 높고 많은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예컨대, 경제적 풍요, 정신적 충만함, 파괴되지 않은 자연 등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진정한 평화의 달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찍이 요한 갈통은 폭력과 갈등의 부재라는 최소한의 소극적인 평화와 대비되는 모든 요건이 충만하게 갖추진 이상적인 상태의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 적극적 평화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평화주의의 목표임을 역설한 바 있다. 현대의 평

화주의는 어떤 평화주의를 기준으로 목표와 수단을 정해야 하는가? 평화의 범위와 질은 평화주의의 또 다른 쟁점이 된다.

위에서 잠시 살펴본 평화주의의 쟁점들은 모두 평화주의를 이상으로 볼 것인가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실천적 정책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해 평화주의를 단지 평화 추구하기로 보느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평화 만들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평화주의는 양자가 혼재되어 있다.

이 글은 미묘한 차이점을 갖고 현대 평화주의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현대 평화주의의 실천적 의의와 그 한계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평화주의와 정전론의 교차점을 확인하면서 현대 평화주의의 좌표를 재규정하고, 양자의 수렴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대 평화주의의 다양한 이론적 스펙트럼을 확인하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기왕의 평화주의에 대한 이해가 단순히 전쟁주의(warism)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이상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개선하고, 실천 윤리의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평화 만들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2. 현대 (20세기) 평화주의의 역사적 배경

### 1) 20세기 초부터 양차 대전까지

20세기 초, 대표적인 평화주의자로 톨스토이를 들 수 있다. 그는 기독교 복음서에 기초한 무저항주의적 평화주의(non-resistant pacifism)를 주창한 바 있다.<sup>19)</sup>

비슷한 맥락에서는 간디는 무저항주의(non-resistance)를 변형하여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비폭력적인 평화주의를 주창하였다. 이러한 간디의 비폭력 평화주의는 마틴 루터 킹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한편 존 듀이는 평화주의가 갖는 취약성과 허점을 드러내며 평화주의를 내실화하고자 했다. 그는 보다 실천적이며, 실효적인 평화주의를 지향했다.<sup>20)</sup> 이런 맥락에서 듀이는 “전쟁을 종식시키는 전쟁”이라는 매우 논쟁적인 개념을 지지한 바 있다. 듀이는 미국 예외주의라는 관념 하에서 미국적 제국주의를 사실상 인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실천적 평화주의라는 입장을 명료하게 세웠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20세기의 평화주의의 흐름은 이상으로서의 평화주의(pacifism)와 실천적 요소를 강조하는 평화화주의(pacificism) 간의 논쟁을 상기시킨다.<sup>21)</sup>

19) “Jesus said, simply and clearly, that the law of resistance to evil by violence, which has been made the basis of society, is false, and contrary to man’s nature; and he gave another basis, that of non-resistance to evil, a law which, according to his doctrine, would deliver man from wrong” (Tolstoy, *My Religion*, 1885: 40).

20) 듀이는 전쟁을 폐기하기보다 실천적으로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는 1917년 평화주의의 미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the future of pacifism lies) in seeing to it that the war itself is turned to account as a means for bringing these agencies into being. To go on protesting against war in general and this war in particular, to direct effort to stopping the war rather than to determining the terms upon which it shall be stopped, is to repeat the earlier tactics after their ineffectualness has been revealed. (Dewey “The Future of Pacifism” *The New Republic* (July 28, 1917): 359)

21) Dower N. (2009). *The Ethics of War and Peace*. Cambridge: Polity Press.

보다 근본적으로 이 논쟁은 평화주의 혹은 평화화주의가 지향하는 평화란 인간 본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상기시킨다. 평화주의가 지향하는 평화가 인간 본성상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면 이는 처음부터 잘 못 설정된 몽상에 불과하다. 이는 인간본성의 문제는 인간의 이성적 범주 내에서 완벽하게 해결될 수 없는 신학적 질문을 불러낸다. 신은 인간을 어떤 목적으로 만든 것인가? 신은 인간에게 어떤 본성을 부여했는가? 그 본성에 따르면 인간은 능히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존재인가? 평화주의 평화화주의 논쟁은 신학적 문제에 답하기 전에는 해결하기 어렵다.

20세기의 초반의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평화주의를 둘러싼 사회적 요인을 주목하였다. 이들은 폭력과 전쟁의 원인을 군사주의를 지향하는 자본주의와 그 계급 그리고 그것의 실질적인 주체인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y complex) 등으로 파악하면서 평화주의의 성패를 반군사주의(anti-militarism)로 전화할 수 있는 사회 변혁에서 찾았다.<sup>22)</sup> 그러나 이 사회 변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상가들마다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평화주의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므로, 사회 변혁을 위해서는 그들의 이상 실현을 위한 군사주의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평화주의의 범주에서 쉽게 이탈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20세기 평화주의 사상 가운데 주목할 만한 입장으로, 러셀, 아인슈타인, 막스 쉐러를 들 수 있다.

우선 러셀과 아인슈타인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차 대전에는 반대했으나, 나치를 상대로 한 2차 대전의 참전은 인정했다.<sup>23)</sup> 따라서 2차 대전에의 옹호는 매우 예외적인 폭력의 허용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러셀은 절대적 평화주의를 옹호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자기방어를 전쟁의 구실로 삼거나, 민주주의의 증진을 위한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 비판적인 견해를 취했다. 오직 나치를 저지하기 위한 2차 대전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셈이다.<sup>24)</sup> 나치의 만행을 저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그러나 그 밖에 언제, 어떤 상황이 이와 같은 정당한 폭력의 사용인가, 또한 어떤 수단까지가 허용되는 폭력의 사용인가는 여전히 제기되는 질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1차 대전 후, 막스 쉐러가 여덟 개의 평화주의 유형을 분류하며 평화주의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을 시도한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sup>25)</sup>

22) Karl Liebknecht, *Militarism and Anti-Militarism*, 1907; Rosa Luxemburg, "The Meaning of Pacifism" 1911. Militarism in both its forms—as war and as armed peace—is a legitimate child, a logical result of capitalism, which can only be overcome with the destruction of capitalism, and hence whoever honestly desires world peace and liberation from the tremendous burden of armaments must also desire socialism. "The Meaning of Pacifism." [www.marxists.org/history/etol/news/pape/themilitant/socialist-appeal-1938/v02n14/luxemburg.htm](http://www.marxists.org/history/etol/news/pape/themilitant/socialist-appeal-1938/v02n14/luxemburg.htm)

23) 아인슈타인: "I am not only a pacifist but a militant pacifist. I am willing to fight for peace. Nothing will end war unless the peoples themselves refuse to go to war" (Einstein 1981: 125). 역시 1928년의 발언에서 그는 "It seems to be an utterly futile task to prescribe rules and limitations for the conduct of war. War is not a game; hence one cannot wage war by rules as one would in playing games. Our fight must be against war itself. The masses of people can most effectively fight the institution of war by establishing an organization for the absolute refusal of military service. Einstein, A. *Einstein on Peace*, (Crown Publishers, 1981), 90

24) (Russel, "the Future of Pacifism" 1934-4)

25) Scheler, M. (1976). "The Idea of Peace and Pacifism: Part 1." *Journal of the British Society for Phenomenology* 7: 154-166; Scheler, M. (1977). "The Idea of Peace and Pacifism: Part 2." *Journal of the British Society for Phenomenology* 8: 35-50. (1926/7, 영역본 1976/7):

- 1) 무저항주의에 기초한 영웅적, 개인적 평화주의
- 2) 기독교적 평화주의
- 3) 자유무역의 평화에 기초한 경제적, 자유주의적 평화주의
- 4) 법적 체계에 기초한 법률적 평화주의
- 5) 공산주의적 평화주의
- 6) 제국적 평화주의 (예컨대, pax Romana)
- 7) 국제 자본주의 부르조아 평화주의 (세계자본가들의 공동이익)
- 8) 문화적 평화주의 (인류애를 위한 세계시민주의와 교육) (중략)

## ○ 안보와 평화구축(평화연구와 안보연구, 전재성)

### I. 평화인가, 안보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세계는 주권국가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주권국가로 인정된 정치체들은 일정한 영토와 국민, 그리고 이를 책임지는 정부를 가지고 있다. 일단 주권국가로 인정되면 다른 국가들, 혹은 국제사회의 어떠한 명령에도 종속되지 않는 최고의 권위와 정당성을 소유한다. 특히 주권국가는 정당하게 폭력을 독점할 수 있기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 폭력을 조직적으로 생산하고 행사할 수 있다. 폭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이유는 국가들이 스스로 맺은 조약에 의해 국제법의 규율이 만들어질 때 이를 준수하는 경우이다. 결국 국가들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폭력사용의 기준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이 없는 평화상태는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국제정치학은 국가들 간의 관계, 특히 폭력이 사용되는 군사관계를 중시하므로 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어떻게 안전하게 보전될 수 있는가를 중요한 문제로 여긴다. 즉, 전쟁의 방지와 국가의 안보를 국제정치연구의 주된 가치로 삼는다는 것이다. 국가들의 서로 소통하면서 공통의 이익을 보전하고 전쟁을 방지하는 상태가 이상적인 상태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 부재의 상태가 곧 온전한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속가능한 평화의 기초가 이루어지고 국가들이 더 이상 군사력 건설과 이에 필요한 과도한 지출을 하지 않을 때 국가들의 안전과 국가들 내의 국민들의 복지가 향상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만약 평화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평화는 단순히 폭력이 부재한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기실현의 목적을 달성해가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평화는 전쟁의 부재로만 정의될 수 없고 더 적극적인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sup>26)</sup>

평화는 전쟁이 발생한 인간 역사의 시원부터 항상 연구되어 온 중요한 주제였지만 현대의 평화연구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1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국제정치학이 현대 분과학문으로 자리잡으면서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본격적인 평화연구로 자리잡지는 못하였다. 곧바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평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기 때문이다. 평화학보다는 안보학이 더 핵심이 된 셈이다. 1959년 노르웨이의 학자인 요한 갈통이 오슬로에서 세계평화연구소를 설립하고 평화연구잡지로서 The Journal of Peace Research를 창간한 것은 중요한 기점으로 여겨진다. 안보도 중요하지만 평화연구가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sup>27)</sup>

이후로 안보연구를 주로 하는 국제정치학과 평화연구를 주로 하는 평화학의 차이가 일정 부분 자리잡으면서 안보와 평화 연구의 관계 설정이 주된 관심사로 대두하였다. 물론 안보연구에서도 평화는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평화를 논할 때에는 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전쟁 방지, 전후의

26) Oliver P. Richmond. "Reclaiming Pea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2008. Vol. 36 No. 3, pp. 439-470

27) Johan Galtung,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London: Sage, 1996)

안정적 처리도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안보와 평화연구를 적절히 조화하여 진정한 평화를 이룰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 글에서는 국제정치학의 다양한 시각이 국가들 간의 갈등, 전쟁, 그리고 평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분석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시각이 평화연구의 현황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향후 안보와 평화 연구가 어떤 미래를 지향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 II. 평화와 안보의 개념

국제정치학에서 안보를 논할 때, 안전의 주체는 국가이며 국가 내에 있는 국민이 다른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되는 상황을 이야기한다. 가능하면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책이 강구되고 안정적인 국제정치환경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평화는 국가들 간의 전쟁 부재뿐 아니라 전쟁을 방지하고 대비하기 위한 평화시의 군사적 노력을 최소화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들의 복지와 개발, 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 상태를 의미한다.

국가들 간의 이상적 관계를 지향하는 국제연합헌장은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공히 서술하고 있다. 국제연합헌장은 안보의 대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즉,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합하며,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원칙의 수락과 방법의 설정에 의하여,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안보의 목적은 인간안보, 혹은 적극적 의미의 평화와도 관련된다.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을 결의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정"하고 "더 많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1조를 보면 안보에 관한 부분은 1항에 적시되어 있는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는 것이다. 2조와 3조는 적극적 평화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즉, "사람들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결국 국제연합도 국가들 간의 전쟁 부재 및 폭력 사용 예방과 같은 상황을 주된 목표로 삼는 동시에, 이러한 안정 속에서 자유, 사회적 진보, 생활수준의 향상, 인권의 증진 등을 추구하는 것을 이상적인 상황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적극적인 평화의 상태는 국가들 간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지 않으면 도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화와 안보는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안보에 대한 국제정치학의 다양한 견해들

### 1. 현실주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이론은 국가들 간의 갈등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고 본다. 국가들 간의 이익이 상충될 뿐 아니라 국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국력을 사용하여 다른 국가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국가들 간의 의사소통과 합의를 강제할

수단이 없으므로 지속가능한 안정과 평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소위 안보딜레마론으로서 국가들은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할 길이 없고, 상대방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과연 방어를 위한 것인지, 혹은 공격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언제나 군사력을 증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국가들 간의 경쟁과 전쟁 발발 가능성, 그리고 안보딜레마 때문에 지속가능한 평화가 오기는 어려운 일이다. 다만 국가들 간의 지속적인 협력, 외교적 수단에 의한 의사소통, 그리고 국력의 팽팽한 균형에 의해 안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세력균형은 국가들 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국가들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전쟁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국가들 간의 군사력 균형이 확보되는 한 전쟁의 부재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만약 스스로의 힘으로 다른 국가들의 군사력에 대항할 수 없다면 장기적으로 자신의 군사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군사적으로 연합하여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국가들 간의 군사력 균형을 명확히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상의 어려움도 있고 상대방에 대한 오해도 가능하므로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들 간의 소통, 세력균형이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암묵적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현실주의에서는 국가의 중심성,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의 중요성, 그리고 국가들 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국제정치에서 지향할 수 있는 목표로 지속가능한 평화보다는 안정과 전쟁의 부재 상태를 추구하게 된다.

## 2. 자유주의

국가들은 군사적 관계만 가지는 것은 아니며 서로 간에 경제적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비교우위를 위해 무역을 하고, 더 나아가 직접 투자를 통해 생산망이 연결되면 국가들 간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진다. 일단 상업적으로 연결된 국가들 간의 관계는 정부 뿐 아니라 경제적 행위자들이라는 비국가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을 매개로 한 긴밀한 관계가 형성된다.

이런 경우 비록 국가 차원의 충돌 요인이 있어도 장기적인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평화를 유지할 강력한 동기가 생길 수 있다.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은 이와 같이 국가들 간의 군사적 차원의 관계 뿐 아니라 경제적 차원의 관계에 주목하며 비국가 행위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만약 비국가 행위자들이 정부의 군사력 행사를 막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룰 확률이 증가하게 된다.

비국가 행위자들이 국가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증폭된다. 민주주의 정부는 국가 내 다양한 행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전쟁을 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 예를 들어 영토분쟁이 발생했다면 경제적 행위자들이 국가들의 전쟁 발발을 만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양국의 경제행위자들이 협력할 수 있다면 전쟁 발발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더 보편적으로 민주주의 정부는 전쟁을 발발하는데 많은 제약을 겪게 되는데,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그 피해는 전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민주절차를 통해 전쟁을 일으키는 데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정부는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분쟁 당사국인 두 국가 모두가 민주주의 국가일 경우 각자가 전쟁 개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신중해질 뿐 아니라, 국내정치에서 협력과 토의에 익숙한 두 국가의 정치문화를 생각해 볼 때, 갈등 국가들 간의 대화와 분쟁해결 노력을 기대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에서는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평화, 즉 민주평화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국가들 간의 협력이 일회적으로 그칠 뿐 아니라 지속될 수 있다면 전쟁 방지와 지속가능한 평화에 한발 더 가까이 가게 된다. 국가들은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많은 국제기구와 국제법, 국

제규범을 생산할 수 있다. 일단 제도화된 협력이 지속되면 국가들은 단기적으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제도적 협력에 의존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점차 국가들의 학습효과가 강화되고 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현실주의자들이 논의하는 무정부상태에서의 갈등과 대립의 상태를 극복하고 전쟁의 부재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장에 기초한 상호이익, 그리고 민주적 평화에 기초한 협력과 대화의 질서를 만들고, 더 나아가 이를 제도화할 수 있다면 안보를 넘어 평화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논의이다.

### 3. 구성주의

구성주의 국제정치학 이론은 국가의 이익과 정책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 간의 상호관계, 그리고 국제정치의 구조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고 본다.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국력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상정한다. 언제 갈등이 발생할지 알 수 없고, 분쟁을 해결해 줄 심판자로서 국제기구나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가 항상 고정된 것은 아니다. 무정부상태가 기본적인 국제정치의 원리라 해도 국가들 간의 협력이 장기간 지속되면 보다 많은 규범들이 만들어지고 규범을 내재화하면 국가들의 정체성 또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핵무기를 개발하여 핵전쟁을 대비하더라도 핵전쟁이 일으키는 막대한 피해와 비인간적인 상황을 점차 절감하게 되면 핵전쟁은 피해야 한다는 규범이 형성될 수 있다. 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비단 억제효과에 의한 것일 뿐 아니라 핵사용 금지의 규범이 내재화된 결과라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의 정체성은 국가들 간의 관계 및 국제구조의 변화에 기초한 규범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된다. 정체성이 변화하면 국가들이 자신의 이익의 내용을 규정하는 방식과 정책도 따라서 변화한다. 그렇게 되면 국제정치의 기본 구조가 무정부상태라고 해도 국가들 간의 협력이 더욱 촉진되는 결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알렉산더 웬트와 같은 구성주의자는 무정부상태를 보다 세분화하여 홉스적 무정부상태와 로크적 무정부상태, 그리고 칸트적 무정부상태로 제시한다. 같은 무정부상태라는 구조가 존재해도 그 구조 속에 다른 분위기의 세분화, 다른 문화의 무정부상태가 출현가능하다는 것이다. 홉스적 무정부상태가 서로를 적으로 대하는 적대적 상태라고 한다면 로크적 무정부상태는 서로를 경쟁자로 대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경쟁적 상태는 최소한 상대방의 존재근거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규칙과 규범에 근거한 경쟁을 서로의 관계를 협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단초를 가질 수 있다. 칸트적 무정부상태는 서로를 우호적인 친구관계로 규정하는 가장 유순한 무정부상태이다. 따라서 무정부상태가 협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협력 또한 이익에 근거하기 보다 협력적인 집합정체성에 근거하는 것이기에 보다 지속가능한 평화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구성주의는 현실주의의 기본 가정을 받아들이고, 자유주의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더라도 보다 근본적인 협력과 안정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협력과 안정이 국가들 간의 정체성 내에 규범으로 자리잡을 때 평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보연구와 평화연구의 다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중략)

## ○ 국제 분쟁 해결: 해양 문제를 중심으로(동아시아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 구민교)

### 1. 해양공간 인식의 확장

□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해양인식은 매우 제한적이었음

- 대부분이 연안국가들이지만 일부 도서국가를 제외하고 오랫동안 대륙국가 정체성을 유지해옴
- 냉전기와 탈냉전기에 걸쳐 동아시아 해양질서는 미국의 패권에 의해 유지됨
- 최근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과 아시아-인도양(Asia-Indian)을 포괄하는 인도-태평양(Indo-Pacific) 권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이 두 해양공간에 대한 인식이 결합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잇는 해상교통로임
- 해양인식의 공간적 확장은 행위자의 다양화와 이슈영역(issue scope)의 다변화를 의미함
- 행위자의 다양화
  -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아세안...
- 해군력의 물리적 확장 경쟁
  - 중국의 모래장성(Great Wall of Sand), 트럼프 리스크, 시진핑 리스크, 아베 리스크
-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interpretation)과 적용(application)을 둘러싼 규범경쟁
  - 타국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군함의 지위와 권리를 둘러싼 미중경쟁
  - 2016년 국제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분쟁 판결
- 해양공간의 영토화(territorialization), 인공섬화(artificialization), 군사화(militarization) 가속화를 특징으로 함
-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함
- 군사적 및 국제법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2. 점 · 선 · 면 해양경쟁

- 점을 둘러싼 경쟁
- 전통적 도서 영유권 분쟁은 거점 확보를 위한 경쟁이었음
  - 1969년 ICJ의 북해 대륙붕 판결: '육지가 바다를 지배 (The land governs the sea)'
  - 바다에서 '점'을 확보하지 못하면 영해는 물론 EEZ, 대륙붕 등에 관한 관할권(jurisdiction) 행사도 어려움
  - 중국의 인공섬 건설 노력과 미국의 동아시아 연안국가 내에서의 거점 확립 노력 등은 그러한 인식을 반영함



그림 1 남중국해의 가장 큰 자연섬인 태평토(이투아바)



그림 2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공사 모습



그림 3 남중국해 인공섬과 자연섬 규모 비교

- 메이지자오(美濟礁, Mischief Reef): 5.58km<sup>2</sup> → 간조노출지
- 용수자오(永署礁, Fiery Cross Reef): 2.74km<sup>2</sup>
- 주비자오(渚碧礁, Subi Reef): 2.4 km<sup>2</sup> → 간조노출지
- 타이핑다오(太平島, Itu Aba): 0.56 km<sup>2</sup>

#### □ 선을 둘러싼 경쟁

- 유클리드 1번 공준: “서로 다른 두 점을 잇는 직선을 그을 수 있다(Two points determine a unique straight line)”
- 중첩수역에서의 전통적인 경계획정 문제
  - 중국의 선 전략: 해상 실크로드, 차항출해(借港出海), 제1, 2도련선, 남해9단선
  - 바둑: 귀에서는 정석, 변에서는 전개, 3선은 실리선, 4선은 세력선

#### □ 면을 둘러싼 경쟁

- 유클리드 10번 공리: “두개의 직선은 면을 만들 수 없다(Two straight lines cannot enclose a space)”
- 미국의 상쇄전략(offset strategy)
- 공해전투 개념은 ‘접근(access)’에 치중한 반면 ‘공역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성 개념’은 ‘기동(maneuver)’과 ‘공역(global commons)’ 개념을 포함함
- 우방국과의 합동 전력운용을 통한 전 지구적 관여

### 3. 해양분쟁 양상의 전망

- 미중 간 해양력 경쟁은 과거 냉전시기 태평양과 인도양의 제해권을 두고 미소 양 진영이 치렀던 전통적 해양 군비경쟁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 과거 미소 간의 경쟁이 ‘선-면’ 대 ‘점’의 대결
- 냉전 당시 세르게이 고르시코프(Sergey Gorshkov) 소련 제독은 “핵잠수함 전력의 등장으로 반드시 해역의 모든 공간을 장기적으로 지배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군사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해역만을 제압하고 있으면 된다”고 주장함



그림 4 중국의 도련선과 미국의 상쇄전략 개념도

- 미중 간 해양패권 경쟁은 ‘점’-‘선’-‘면’ 전략의 동시다발적 경합과 충돌임
- 중국의 해양굴기, 해양대국화 전략
-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의 유·무인도서에 대한 영유권 강화라는 ‘점’ 전략에서 출발함
- 남해구단선, 진주목걸이(string of pearls) 전략, 제1도련, 제2도련으로 대표되는 ‘선’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음
- 미국의 해양패권에 대한 방어적 성격인 ‘반접근 지역거부(A2/AD)’ 전략은 앞으로 공격적인 ‘면(plane)’ 전략, 더 나아가 ‘공간(space)’ 전략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그림 5 중국의 일대일로 개념도



그림 6 미국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개념도

- 영토 이슈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개연성은 아직 낮지만 갈등적인 정체성 정치로 인해 상호 간 협력의 기회 역시 매우 적음
- 해양 영유권과 관련해서는 호전적인 담론을 사용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다행히 중국은 전쟁 발발의 위협을 무릅쓸 전쟁광은 아님
- 동시에 중국은 서유럽 국가 및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해양 규범을 순순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 중국의 해양대국화와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에 이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전통적 해양세력인 일본의 재부상을 유인하는 지정학적 환경을 제공 (중략)

## ○ 환경과 평화(평화와 환경, 홍종호)

### I.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의 상관성

#### 1.1 복합적 평화학과 환경

- 기존 평화학 문헌을 간략히 환경/지속가능성이 왜 평화학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지 간략히 서술할 것임.

#### 1.2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 왜 평화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때 평화가 유지, 존속될 수 있음을 추가적으로 논증할 것임.

경제성장이 필연적으로 환경 질을 악화시키느냐 아니면 양자 간의 조화가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이론이 존재한다. 전자는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라는 입장으로, 후자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으로 대표할 수 있다.

신고전학과 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으로 대표되는 주류경제학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낙관적인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자연고갈이나 환경오염은 시장의 가격기능이나 새로운 기술 개발에 의해 상당한 정도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1972년 로마클럽(Club of Rome)의 보고서가 이러한 낙관론에 경종을 울렸다. 미국 MIT 대학의 메도우스(D. L. Meadows) 교수 등이 참여한 이 연구는 『성장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경제는 인구증가, 농업생산, 자연자원, 산업생산, 환경오염 등을 토대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만일 이들 요소들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면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주로 재생불가능한 자연자원이고, 이들은 무한정 공급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성장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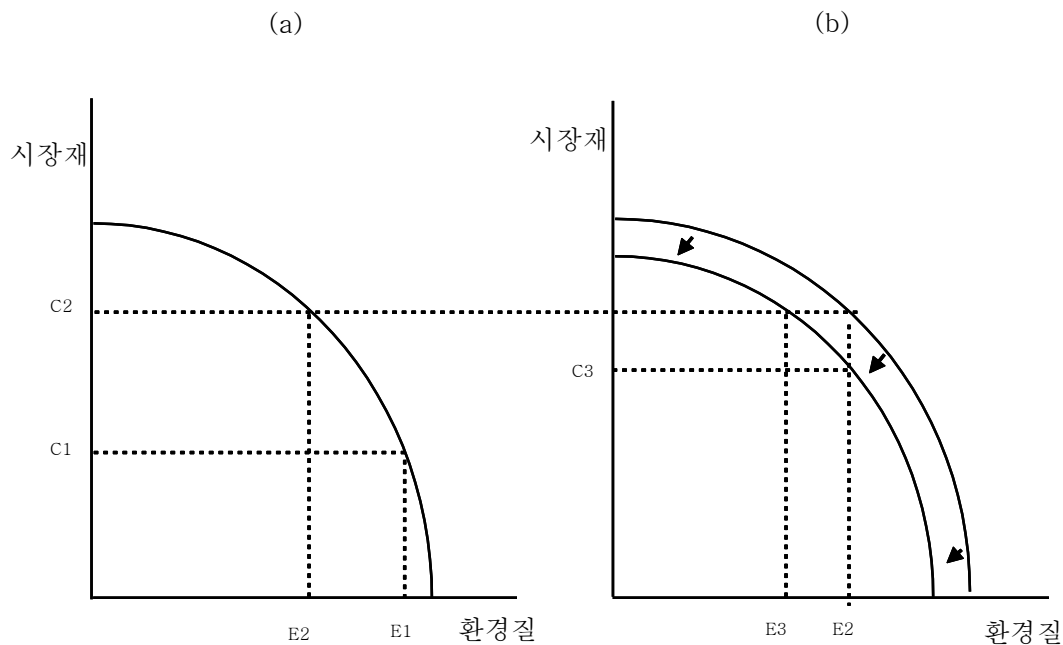
이들은 성장과정에서 파괴된 환경오염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은 공존할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자원고갈과 환경파괴에 의한 종말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로 성장을 감수할 정도의 획기적인 경제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책은 당시 지성계에 커다란 파장을 가져왔고, 20년 후인 1992년 『한계를 넘어서』(Beyond the Limits)라는 제목으로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두 연구에 사용된 모형의 기본 형태는 동일하며, 현재와 같은 생산 및 소비방식이 계속될 경우 인류의 미래는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적인 견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이에 반해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와 통합을 목표로 하는 발전전략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는 80년대 초부터 사용되었으나 그 개념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은 1987년 UN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발간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유명한 보고서에서 이루어졌다. 이 보고서는 당시의 위원장이었던 노르웨이 수상 Brundtland의 이름을 따서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도 불린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존의 낙관적 경제 성장론이 갖는 한계성을 인식, 진정한 성장은 환경보전과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환경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 뒷받침될 때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성장우선주의를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성장의 한계가 갖는 극단적인 입장에서 떠나 현재 세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성장과 보전 간 조화가 가능하다는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에서는 미래세대로 하여금 현재세대가 향유

하는 후생수준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연자원과 환경 질을 유지시켜 주는 성장경로를 밝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자연자원을 절약하는 생산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환경 친화적인 경제구조를 구축하려는 경제주체들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의사결정을 나타내는 생산가능곡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에는 두 개의 생산가능곡선이 나타나 있다. 그림 (a)는 현재 세대의 시장재와 환경질의 상충관계를 나타내는 생산가능곡선이고, 그림 (b)는 미래 세대의 시장재와 환경질의 상충관계를 나타내는 생산가능곡선이다. 현재 세대는 미래세대의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그림 (a)의 어느 점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 세대의 결정은 불가피하게 현재 세대의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림 1>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생산가능곡선

예를 들어 현재 세대가 환경질의 희생 위해 많은 수준의 시장재를 생산하는 점( $E_2, C_2$ )와 같은 의사결정을 했다고 하자. 이러한 결정은 자연자원 고갈이나 환경문제를 야기하여 미래 세대의 생산가능곡선을 아래쪽으로 하향이동하게 만든다. 따라서 미래 세대는 현재 세대와 같은 양의 시장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세대보다 더 낮은 환경질 수준인  $E_3$ 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현재와 같은 환경질 수준인  $E_2$ 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세대보다 적은 수준의 시장재인  $C_3$ 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

위의 설명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만약 현재 세대가 환경질을 크게 악화시키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는 미래 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조합을 크게 제약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성장과 보전이 통합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래 세대에게 과거보다 적은 양의 자연자원을 이용해서 같은 양의 시장재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적인 기술 진보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 경우 현재세대가 시장재의 생산을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미래세대의 생산가능곡선이 반드시 하향 이동하지는 않을 수도 있으며, 하향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크지 않을 수 있다.

2015년 UN 총회에서 193개국이 합의한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비전과 전략을 다루고 있다. 지속가능 발전목표는 평화(Peace), 번영(prosperity), 지구(planet),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이라는 5P를 기초로 17개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에 UN이 제시했던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확장, 대체하면서 불평등, 경제성장,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평화라는 포괄적인 가치를 포함하였다.

우리는 SDGs가 평화 어젠다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1992년 리오 지구정상회의(Rio Earth Summit)에서 채택된 리오선언 제22항은 “평화, 개발, 환경보호는 상호의존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임을 적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SDGs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평화 이슈를 포함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평화 이슈 배제를 주장하는 측은 분쟁과 갈등의 원인은 빈곤과 불평등이기 때문에 SDGs는 저개발과 빈곤 문제 해결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평화 이슈 포함을 주장하는 측은 부패와 폭력, 분쟁과 갈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경제발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이러한 상황 하에서의 발전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즉 장기적 관점에서는 평화가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 II. 빈곤과 생태파괴

- Duraiappah(1997)에 의거하여 빈곤과 환경오염의 복잡한 상호의존성을 분석함.
- 이를 통하여 빈곤과 생태파괴가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돼 있음을 설명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인간 삶의 평화를 저해함을 논증할 것임.

Duraiappah(1997)는 환경오염 요인은 단순히 빈곤만이 아님을 지적하며, 그 요인을 크게 (1)빈곤, (2)권력과 부, (3)제도와 시장의 실패, 이상의 세 가지로 제시함으로써 보다 복잡한 원인이 존재함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빈곤과 환경오염의 관계는 보다 복잡하다. 빈곤이 환경오염을 야기하지만, 그 반대의 관계도 발생한다. 즉 환경오염이 빈곤을 만들어내기는 경우도 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환경오염에 의해 야기된 빈곤이 또 다른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상황도 가능하다. (중략)

### ○ 과학기술과 평화: 예방의학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보건안보, 황승식)

서론: 보건안보의 개념과 비전통 안보위협으로 안보 개념의 변화

본론 I: 팬데믹 대응 안보의 필요성

약품 공급 안보의 필요성

의료기기 공급 안보의 필요성

비약품 공급 안보의 필요성

국제 공동 대응의 필요성

본론 II: 남북 보건의료 협력의 필요성

글로벌 감염병 감시체계 참여

역학조사 고도화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진단 치료 의료기기 공급  
마스크 생산 및 공급

결론: 팬데믹 시대 보건안보 대응을 위한 협력 방향 및 과제

## ○ 인도적 개입과 평화 구축(평화구축과 국제개발, 김태균)

“발전 없이 평화 없고, 평화 없이 발전이 없으며, 인권 없는 평화와 발전은 없다(There is no peace without development, there is no development without peace, there is no peace and development without human rights).”

- 제7대 UN 사무총장 코피 아난(Kofi Annan) -

### I. 들어가며

평화학(Peace Studies)의 핵심 이슈이자 중대목표 중 하나인 ‘평화구축(peacebuilding)’에 관한 기존 연구의 의제는 다양하게 확장해 왔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평화구축 연구는 주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평화구축 연구의 주제로서 분쟁해결 이후 *개발(발전)*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sup>28)</sup> 실제로, 평화구축의 개념은 내전과 분쟁 및 갈등을 해결하고 분쟁해결 이후 평화유지와 평화중재 등의 노력을 강구하여 평화상태의 관리, 발전 및 공고화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정책과 제도를 포괄한다. 다시 말해, 평화구축은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정의를 재구축하고 문명파괴적인 갈등을 조장하는 문화적·구조적인 조건을 평화적으로 전환시키려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반한다(Rapoport, 1992; Coning, 2013). 이러한 맥락에서 평화구축 과정은 폭력예방(violence prevention),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 분쟁해결(conflict resolution), 분쟁전환(conflict transformation), 분쟁 후 중재(post-conflict reconciliation) 및 외상치료(trauma healing) 등과 같이 폭력과 갈등의 단계에 따라 다층적인 대응체계를 구현한다. 그러나 평화구축의 기존 스펙트럼은 폭력, 갈등, 분쟁에 대한 문제해결 기능을 강조하는 수동적인 대응체계 성격이 강하며, 평화와 발전이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분쟁 이후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정책이 능동적으로 동원되고 결국 발전을 통해 분쟁이 재발하지 않는 선순환적 처방은 아직까지 주류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평화구축과 국제개발 간의 상호 관계성을 주요 의제로 채택하고 국제수준에서 평화-개발(발전) 연계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검토한다. 평화구축의 단계와 범주는 분쟁해결과 분쟁 후 발전 이슈를 동시에 포괄할 정도로 확장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평화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개발협력정책의 기획 및 투입이 가능하다(Gisselquist, 2018; 김태균, 2020). 이로써, 분쟁단계에 필요한 평화유지(peacekeeping) 중심의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부터 분쟁

28) ‘Development’라는 단어의 국문 해석이 개발 또는 발전으로 가능하고 실제로 학문영역이나 학자의 선호도에 따라 개발과 발전이 development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development를 開發로 해석하는 경우는 좁은 의미로 development를 인식하는 것으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가 협력대상국에 기획된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이행하는데 개발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가 등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여부가 중요하다. 반면, 같은 단어이지만 development를 發展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광의의 유형을 상정하는 것으로 개발의 범주보다 확장된 형태의 사회적 영향력(impact)까지 포함하는, 즉 미시적인 개발프로젝트부터 거시적인 사회발전까지 통합적으로 이행하는 접근법이다(김태균, 2019a, 2016).

이후 국가재건 및 경제발전을 위한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까지 평화구축은 인도주의, 발전, 그리고 평화가 조우할 수 있는 전략적 연계공간과 기회를 제공한다. 2018년 국제연합(UN)과 세계은행(World Bank)이 ‘인도주의-발전-평화 연계(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HDP Nexus)’를 글로벌 규범으로 강조함으로써, 기존 인도주의·발전주의·평화주의 각각의 분절적인 접근이 아닌 통합적인 시너지를 통해 분쟁에 내재된 폭력의 복합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공유되었다(United Nations and World Bank, 2018). 같은 맥락에서 이미 2007년 코피 아난(Kofi Annan) 전 유엔사무총장이 발전 없이 평화 없고, 평화 없이 발전 없으며, 인권 없이 평화와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상호 관계성을 규명하여 UN의 세 가지 핵심가치인 평화·발전·인권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수준의 통합적 경향을 평화구축과 국제개발에 적용하여 본 연구는 평화구축 프로세스를 분쟁해결 단계와 분쟁 이후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국제개발의 원조방식과 평화구축 간의 연계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를 위한 개념적·경험적 토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평화구축과 관련된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와 평화유지 및 다양한 평화활동 개념들을 소개한다. 또한 최근 영미 권에서 평화학 연구의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양질의 평화(quality peace)와 전략적 평화(strategic peace) 등의 새로운 이론을 평화학의 선구자로 평가되는 요한 갈통(Johan Galtung)의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와 비교·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평화구축과 국제개발 간의 연계 방식을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의 이분법적 접근과 분쟁해결 단계와 분쟁 이후 단계의 이분법과 연동하여 소개한다.

## II. 포용적 평화집합체로서의 평화구축(Peacebuilding)

실제로 평화활동(peace activity)과 관련된 평화 개념은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때로는 서로 중첩되거나 유사한 의미를 일정 정도 공유하는 등 평화활동의 실제 현장에서 인식의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평화 개념의 다양성은 평화유지(peacekeeping), 평화중재(peacemaking), 평화구축(peacebuilding), 평화강제(peace enforcement), 분쟁 후 평화구축(post-conflict peacebuilding),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 위기외교(crisis diplomacy) 등으로 서로 관장하는 개념적 범위가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지만 상호 공통된 영역이 교집합으로 이어짐에 따라 평화활동이 겹치는 한편 연동되는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러한 연결고리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갈등곡선(Curve of Conflict)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갈등예방(conflict prevention)·위기관리(crisis management)·평화구축(peacebuilding)으로 이어지는 곡선의 스펙트럼 상에 다양한 평화활동의 유형이 접속하게 된다(Lund,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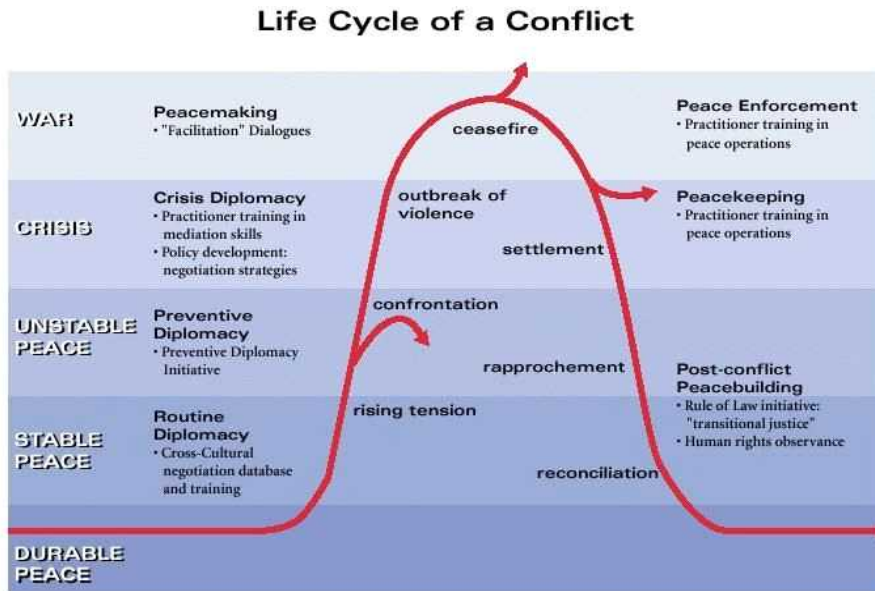
갈등곡선은 시간의 축(단기·중기·장기 등)과 분쟁단계의 축(평화·갈등·위기·전쟁 단계 등)에 의거하여 구성되는데, 분쟁단계 축에서 평화는 다시 내구적(durable)·안정적(stable)·불안정한(unstable) 평화로 구분하여 정도의 세분화가 가능하다. 갈등곡선의 스펙트럼 중 초기단계의 경우 주로 갈등과 분쟁을 예방(prevention)하는 평화활동이 분쟁단계에 따라 예방외교와 위기외교가 적절하게 배치된다. 불안정한 평화 상태에는 예방적 외교가 투입되어 분쟁을 고조시키는 대립과 저항이 완화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위기단계에는 분쟁 당사자에게 중재기술과 협상전략을 교육시킴으로써 분쟁이 전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정책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위기를 관리한다.

중기단계에서는 갈등과 폭력이 위기단계와 전쟁단계로 악화되는 과정에서 주로 평화중재와 평화강제를 통해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와 분쟁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적인 책무가 된다. 전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은 전면적인 폭력이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개입이 기획되고 글로벌 규범에 준하여 평화적 해결을 중재하거나 필요시 평화를 수호하거나 재건하기 위한 물리적 강제가 투입될 수 있다(Wheeler, 2000). 전쟁 중인 분쟁당사자 및 이해관계 주체에게 휴전(ceasefire) 또는 전쟁 종식을 주선(good office)하거나 중재/조정(mediation)하는 평화중재의 역할이 갈등곡선의 중기단계에서 주요한 평화활동의 유형이다(Wennmann, 2011). 평화중재와 함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강제하기 위한 평화강제가 평화작전(peace operation)의 주요 개입방식으로 활용되며 이는 평화유지군 개입과 같은 물리적인 평화유지

노력으로 이어진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평화구축(peacebuilding)의 경우, 평화유지와 분쟁 후 평화구축으로 크게 세부 단계를 나눌 수 있다. 평화강제와 평화중재를 통해 휴전 또는 중전이 선언되면 평화작전을 통해 분쟁지역에 평화적으로 전후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와 민주적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환기 치안과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 PKO)이 선도하게 된다(Foley, 2017). 이러한 전환기의 평화유지는 궁극적으로 분쟁 후 평화구축에 해당하는 전환기 정의의 민주적 제도화, 법치(rule of law)의 제도적 정착, 인권준수(human rights observance) 등 정치적 개혁과 사회경제발전의 모색하는 개발협력 등의 분쟁 후 경제·사회발전으로 확장된다(Panić, 2011).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는 분쟁종식 후 과거사 청산, 이질적인 국민들 간의 통합, 그리고 미래 국가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전환기 정의의 제도화는 사회적 합의와 사회계약으로 지속가능해지며 이 과정이 준수되지 않으면 법치와 인권준수의 사회적 원칙이 파괴되고 다시 분쟁상태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Kim, 2019; 강욱·홍정민, 2014; Murshed, 2011). 따라서 평화구축은 분쟁종식(settlement)부터 화해(reconciliation)의 공고화까지 중장기적으로 사회통합의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의 평화구축 단계에 비로소 국제사회의 국제개발협력 개발원조 프로젝트가 투입되어 그 효과성을 사회발전으로 환원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공간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림 1] 마이클 룬드(Michael Lund)의 갈등곡선(Curve of Conflict)



*From Preventing Violent Conflicts: A Strategy for Preventive Diplomacy, by Michael S. Lund (USIP Press, 1996).*

지금까지 살펴 본 룬드의 갈등곡선 스펙트럼에 제시된 분쟁예방·위기관리·평화구축으로 이어지는 단기·중기·장기의 세 단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광의의 평화구축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Zelizer and Oliphant, 2013). 평화구축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단기에 해당하는 예방외교·위기외교·평화중재 등의 분쟁예방조치와, 중기에 해당하는 평화중재·평화강제 중심의 위기관리조치, 그리고 장기에 해당하는 평화유지·분쟁 후 평화구축 등의 평화구축조치 등 모든 일련의 평화작전 사이클이 통합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화구축은 협의와 광의로 구분되어야 하며, 갈등곡선의 모든 과정을 포용적(inclusive)으로 통합하는 평화 집합체(collective body)로서 '평화구축'을 광의의 평화구축 개념으로 재정의하고 긴 호흡으로 분쟁지역에 적용해야 하는 평화활동의 종합적 처방으로 인식해야 한다(Jeong, 2002).

이러한 평화구축에 관한 통합적 접근은 1992년 제7대 유엔사무총장이었던 부트로스-갈리(Boutros-Ghali,

1992)에 의해 *An Agenda for Peace Preventive Diplomacy, Peacemaking and Peacekeeping*라는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정책의 형태로 제안되었다. 부트로스-갈리 사무총장은 본 보고서를 통해 예방외교, 평화중재, 그리고 평화유지라는 UN의 역할을 제안하고 구체적으로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PKO와 같은 실질적인 UN의 평화작전이 구체화되었고 코피 아난(Kofi Annan)이 1992년부터 1996년까지 평화유지를 전담하는 유엔사무차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UN의 평화유지활동은 제도적으로 안착되었다. *An Agenda for Peace* 보고서에서 부트로스-갈리 사무총장은 예방외교, 평화중재, 평화유지라는 세 가지의 특수한 평화활동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 세 방식이 모두 평화구축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발전해 온 UN의 평화작전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과 정책은 최종적으로 평화구축의 개념으로 수렴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Cousens, 2001; Jeong, 2002; Coning, 2013). 다시 말해, 평화구축은 다학제의 통합적이면서 범분야적인(cross-cutting) 방식을 취하게 되며 중장기적으로 국내와 글로벌 수준에서 모든 사람들이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할 수 있는 토대에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요컨대, 평화구축은 최종적으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는 목표를 전략적으로 이행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략적 평화구축(strategic peacebuilding)’이라는 신개념이 학자들에 의해 제안되었고, 평화구축의 성패가 결국 양질의 평화(quality peace)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필수요건으로 강조되며(Wallensteen, 2015), 일개 국가의 국가건설(state-building) 과정을 평화구축과 동일시하는 거대 담론도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Woodward, 2011). 전략적 평화구축은 폭력의 뿌리를 제거하는 소극적 기능뿐만 아니라 평화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대와 분쟁지역 시민의 주인의식을 창출하며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사회 전체를 안정화시키는 적극적인 기능까지 포괄하게 된다(Donais, 2012).

지금까지 거론된 평화활동에 포함되는 다양한 유형의 개념을 아래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각각의 유형과 개념은 궁극적으로 전략적인 광의의 평화구축으로 귀결된다.

[표 1] 평화활동의 다양한 유형과 개념

| 평화활동 유형                        | 개념 정의                                                                                                                                  |
|--------------------------------|----------------------------------------------------------------------------------------------------------------------------------------|
| 평화유지(peacekeeping)             | 분쟁지역의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UN PKO 또는 경찰인력 및 민간 전문인력을 분쟁당사자들의 합의 하에 UN 및 지역기구가 현장에 배치하는 평화작전                                                |
| 평화중재(peacemaking)              | UN헌장 제4장에 명시된 평화적인 방법들을 통해 적대적인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분쟁중재 등의 행위                                                                        |
| 평화구축(peacebuilding)            |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폭력과 분쟁을 해결하고 파괴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문화적 및 구조적 조건을 변화시키는 평화활동으로서, 인종·종교·계급·언어 등 수평적 경계에 걸쳐 건설적인 개인, 집단 및 정치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통합적 평화활동 |
| 평화강제<br>(peace enforcement)    | 분쟁에 연루된 전투원 및 전쟁 주체의 의지에 반하여 분쟁지역에 평화를 강제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투입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UN헌장 제5장에 의거하여 안정보장이사회의 분쟁해결과 휴전을 집행시키도록 군사력 사용을 승인할 수 있음.         |
| 예방외교<br>(preventive diplomacy) | 갈등 국면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소지를 예방하며, 현재의 갈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확장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행위                                                  |
| 위기외교(crisis diplomacy)         | 분쟁이 고조되고 전쟁으로 전환될 위기 상황에서 위기의 원인을 찾아내고 갈등과정에 관련된 이해당사 주체가 협상과 화해를 통해 위기가 악화될 가능성을 낮추는 행위                                               |

### III. 평화구축의 평화이론: 적극적 평화, 양질의 평화, 전략적 평화, 수평적 불평등

평화구축이 포용적인 평화집합체로 인식되고 분쟁해결의 총체적인 광의의 패러다임으로 해석되는 이면에는 평화학의 주류 이론으로 자리 잡아 온 일련의 평화학 이론의 적극적인 지원이 동원되었다. 광의의 평화구축이 가지는 이론적·경험적 힘의 정당성과 체계적인 홍보는 이러한 평화학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다양한 이론이 평화구축과 이론적 연결성을 지니고 있지만, 평화구축의 포괄성, 총체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강화하는데 기여를 한 네 종류의 주요 평화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평화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요한 갈통(Johan Galtung)의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와 포용적인 평화구축 간의 이론적 결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갈통은 물리적 폭력을 통제할 수 있는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와 사회에 배태된 구조적 폭력까지 근절하는 적극적 평화를 구분하고 소극적 평화에서 적극적 평화로 전환하는 다양한 평화적 방법(peaceful means)을 이론화하였다(Galtung, 1996). 갈통에게 평화는 단순히 갈등을 통제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수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연결되고 문명의 전환까지 모색되는 구조적이며 문화적인 프로세스인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 평화 개념은 분석 수준과 분석 단위 측면에서 평화구축과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분석 수준에서는 적극적 평화가 포괄하는 평화의 구조적, 문화적, 사회적 측면이 광의의 평화구축이 표방하는 거시적이며 중장기적인 사회협약에 기반한 평화의 제도화 과정과 부합한다. 분석 단위의 경우, 적극적 평화가 지향하는 분석의 목표가 사회구조이기 때문에 적극적 평화는 분석 단위로 사회전체를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와 유사하게 광의의 평화구축도 단기적인 분쟁 이후 평화구축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인 평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사회계약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시적인 사회전환을 분석 단위로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주로 스웨덴 욥살라대학교(Uppsala University) 학자들이 주창한 양질의 평화(quality peace) 이론이 제공하는 평화구축 담론이다. 양질의 평화는 평화의 질적 제고를 통해 단순히 평화구축이 평화적 분쟁해결과 분쟁 후 평화제도 구축이라는 미션 이행을 넘어서 제공된 평화가 어느 정도로 분쟁지역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사회적으로 평화가 공론화되고 사회질서의 원칙으로 합의되었는가 등에 관한 질적 평가를 중요하게 여긴다(Wallensteen, 2015). 이러한 질적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질의 평화는 종전 후 안보(post-war security), 거버넌스(governance), 경제재건(economic reconstruction), 화해와 전환기 정의(reconciliation and transitional justice), 그리고 시민사회(civil society) 역량강화 등 다섯 기준으로 질적 수준을 평가한다(Joshi and Wallensteen, 2018). 다섯 영역을 종합해 보면, 양질의 평화는 분쟁 이후 국가가 국가 재건을 위해 기획해야 하는 모든 국정과제를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곧 광의의 평화구축이 추구하는 중장기적 가치 및 거시적 목표에 적절하게 부합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마찬가지로, 평화의 전략화(strategy of peace) 또는 전략적 평화도 궁극적으로는 광의의 평화구축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략적 평화는 '전략적 평화구축(strategic peacebuilding)'을 전략적 평화와 등가물로 인식하거나 전략적 평화의 부분집합으로 강조한다(Lederach and Appleby, 2010). 미국 노트르담대학교(University of Notre Dame) 학파가 주창한 전략적 평화는 포용적인 평화구축을 목표로 분쟁지역의 정치·사회·경제발전을 도모하기 때문에 평화구축을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Philpott, 2010; Cortright et al., 2017). 동원된 다양한 방법들 중 특정 방법이 평화구축의 목표 달성에 긍정적 영향을 제공했다면 성공요인으로 분류하여 이 요소들을 관리하여 평화구축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략화한다. 따라서 전략적 평화 이론은 평화구축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요인들을 동원하고 그 중 성공요인만을 추려내어 전략화하는 접근법을 구사한다. 전략적 평화구축의 성공적 결과는 자립적으로 지속가능한 평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외부 생태계가 형성되고, 전환기 정의가 활발하게 작동하며, 법치가 제도화되어 분쟁이 재발하는 가능성이 최소화하고, 분쟁에 배태된 사회적 그리고 구조적 이슈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는 노력을 수반한다.

마지막으로,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불평등·인간안보·인종연구센터(Centre for Research on Inequality, Human Security and Ethnicity: CRISE)에서 제시한 평화구축과 분쟁에 대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적 접근법, 즉 분쟁지역의 인종 간 발생하는 '수평적 불평등(horizontal inequalities)' 이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Stewart, 2008; Langer et al., 2012). 기존의 갈등이론은 대부분 분쟁지역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힘의 경합과 이에 따른 수직적인 관계 형성이 기본적인 가정으로 깔려있는데, 수평적 불평등 이론은 분쟁지역에 공존하고 있는 다양한 인종집단 중 특정 집단이 배제되거나 차별적인 혜택을 받을 경우 수평적인 평등이 불평등으로 변하게 되어 갈등이 발생한다는 논리를 제공한다. 따라서 평화의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로 인종 간 수평적 평등을 제공하는 제도의 공고화를 제안한다. 이는 광의의 평화구축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내부적 관리 시스템과 연결되며, 평화구축을 동참하는 다양한 인종집단 간의 평화적 관계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포괄적 평화집합체로서의 평화구축을 이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4대 주요 이론을 검토하였듯이 공통적으로 평화구축의 지속가능성과 총체성을 전제로 상정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그리고 총체적인 평화구축이 현실 세계에서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전제가 필요하다. 평화구축 단계에서 경제개발과 사회발전이 수반되지 않으면 다양한 이론적 장치가 설명력을 잃게 된다(Brown, 2011). 평화구축과 국제개발 간의 적극적인 연대를 중요한 평화구축의 지속가능성과 총체성의 전제로 인식하고, 평화구축의 단계에 따라 국제개발의 특정 방식과 결합이 가능한지 그리고 특정 결합방식의 포용성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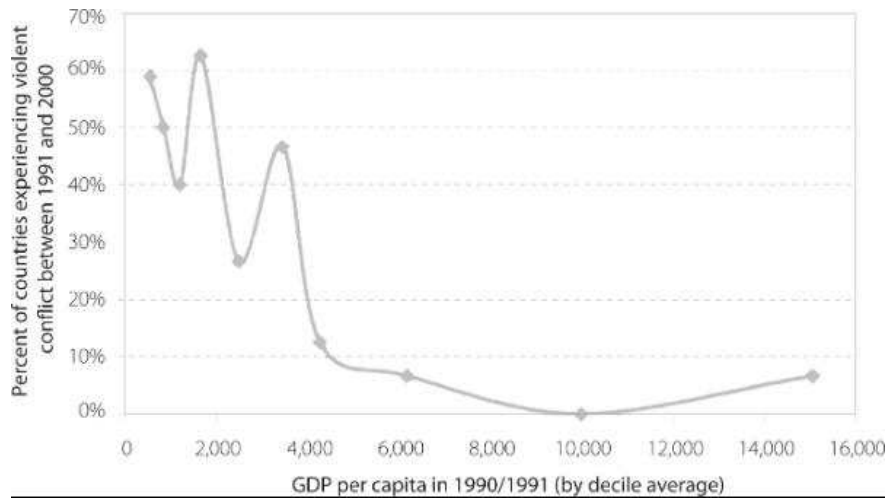
### III. 평화와 발전의 연계: 인도주의, 개발협력, 평화조건

일반적으로 기존의 수많은 연구에서 발전 정도와 분쟁 정도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성이 강조되어왔다(Fearon and Laitin, 2003; Duffield, 1994; Brown, 2011; Hegre and Sambanis, 2006).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내총생산(GDP)과 분쟁가능성은 상호 역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일수록 분쟁의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많은 학자들이 발전과 분쟁 간의 관계를 연구하고, 특히 ODA를 비롯한 국제개발원조가 어떻게 분쟁국가의 개발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여 분쟁 발생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학술적 시도가 진행되어 왔다. 이는 앞서 논의한 평화구축이 실제로 지속가능한 형태로 안착되고 평화구축에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포용적으로 평화구축 과정에서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와 직결되는 문제의식이다. 분쟁지역의 현지 주민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경제행위를 통해 개인의 경제적 여유가 가족과 지역 커뮤니티, 그리고 사회 전체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면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구축의 다양한 기초이론인 적극적 평화, 전략적 평화, 양질의 평화, 수평적 불평등 등이 발전(개발)이라는 필수조건과 상생의 관계를 상수로 가정해야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그림 2] 1990년대의 GDP-분쟁 연계성

자료: Brown (2011: 54).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개발과 평화구축이 연계될 때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분쟁지역의 정치경제적 조건, 역사적 배경, 분쟁해결의 과정과 정도 등에 따라 국제개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기제가 달라진다(Caplan, 2019). 여기에서 개발현장에서 요구되는 정교한 정부감각과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대신, 평화구축의 단계에 따라 국제개발의 차등적 대응전략을 이론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평화구축과 국제개발 간의 연계는 앞서 논의한 룬드의 갈등곡선에서 보여준 단기·중기·장기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개발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크게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과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이 단계별로 적용이 가능하다. 인도적 지원은 주로 단기와 단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전환기 단계에 투입되는 개발전략이며, 개발협력은 중장기 전략으로 중기에서 장기로의 전환기,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주로 평화구축과 연계된다.

[표 2] 인도주의적 지원과 개발협력의 차이점

| 인도주의적 지원<br>(Humanitarian Assistance)                                                                                                                                                                                  | 개발협력<br>(Development Cooperation)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제재 및 권위주의체제 하에서도 지원 가능</li> <li>단기적 처방</li> <li>식량위기, 기근과 같이 긴급사태에 대한 인도적 대응</li> <li>주로 UN 산하기구와 국제NGO가 주요 공여 주체</li> <li>인도적 지원 대상 정부와 긴밀한 정책조율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재 종료 후 및 정치개혁 후 본격적인 지원가능</li> <li>중장기적 개발을 위한 종합적 처방</li> <li>협력대상국의 경제개발계획 등과 조율을 통한 사회경제개발 지원</li> <li>UN기구, 다자개발은행(세계은행, ADB 등), 국제NGO가 주요 공여 주체</li> <li>개발협력을 위해서 협력대상국 정부와의 긴밀한 정책 조율 및 협력이 필요조건임.</li> </ul> |

자료: 김태균(2019b) 일부 수정 보완; Jobbins (2013); Wisler (2013).

[표 2]는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이 평화구축의 목표와 연계되었을 경우 목도되는 다양한 차이점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인도적 지원은 주로 단기적 처방으로 식량위기, 대기근, 자연재해, 물리적 갈등, 전쟁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긴급지원의 형태로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인도적 대응으로 기획된다(Jobbins, 2013; 김태균, 2019b). 이는 긴급사태의 위기를 대응하는 인도주의적 개입이기 때문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긴급상황에 대응하는가가 관건이다. 따라서 분쟁지역 또는 긴급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이던 권위주의이던 상관없이 위기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인도적 지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부패와 인권탄압이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권위주의 국가로 인해 긴급사태가 발생하거나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긴급사태가 악화되는 현상에 대한 UN 내부의 해석이 달리 나타난다(Duffield, 1994; Boyce, 2011). 인권중심의 UN기구는 긴급사태가 발생해도 그 지역의 정부가 독재와 부패의 온상일 경우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반면, 인도적 지원을 주 임무로 삼고 있는 UN기구는 정치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지역에 신속하게 식량원조를 비롯하여 기초적인 긴급지원을 실시한다.

논쟁은 아직도 지속되지만, 인도적 지원의 주류는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권위주의 독재체제에도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바로 인도적 지원을 투입한다는 방향성으로 수렴된다. 단기적 처방으로서 인도적 지원을 담당하는 주체는 주로 세계식량기구(WFP)와 유엔인도지원조정실(UNOCHA) 등과 같은 UN 산하기구 및 옥스팜(Oxfam),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등의 국제NGO로 양분된다. 인도적 지원은 평화구축 과정의 초기 단계에 긴급 위기상황을 통제하고 분쟁의 확장을 예방하여 평화구축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입되는 국제개발의 전략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도적 지원을 받는 정부와 정책조율을 긴밀하게 모색할 필요성이 개발협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국제사회가 긴급사태를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정당성이 보다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평화구축을 위한 개발협력은 인도적 지원과 달리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쟁지역의 국가와 사회에 개입한다(Wisler, 2013; Gisselquist, 2018; Panić, 2011; 김태균, 2019b). 개발협력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분쟁지역의 경제제건을 통해 평화구축을 이행한다는 중장기적 개발을 위한 종합적 처방이기 때문에, 경제개발과 사회발전을 위한 현지의 제도적 조건과 환경이 일정 수준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분쟁 후 국가가 국제규범 위반으로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면 개발협력의 원조프로젝트는 원칙적으로 기획되기 어렵다. 제재가 풀리고 평화선언(peace accord)이 공식화된 후에 본격적으로 개발협력이 이행될 수 있으며, 개발협력은 분쟁을 평화 단계로 전환시키는 혁신적인 접근을 토대로 재구성되는 통합적 평화구축 프레임은 협력대상국에 제공하게 된다. 개발협력은 일반적으로 ODA가 준수해야 하는 국제규범과 원칙에 준하도록 관리되어야 하는데, 특히 협력대상국의 오너십(ownership)을 존중하고 협력대상국의 경제개발계획 등 현지의 제도와 정책과 공여주체의 ODA가 조율되어 상호 일치(alignment)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Donais, 2012). 개발협력의 주요 이행주체로는 인도적 지원과 유사하게 UN기구나 국제NGO를 비롯하여 중장기 대규모 경제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다자개발은행이 핵심 주체로 활동하게 된다. 대규모 경제개발이 이행된다는 의미는 대규모의 개발자본이 분쟁지역에 투입되는 것이고 이는 곧 개발프로젝트가 성공하지 않으면 공여주체에게 대단히 치명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협력대상국 정부와의 긴밀한 조율뿐만 아니라 파트너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구축의 시간 축 중 중기부터 장기까지 총괄하는 개발협력 전략은 인도적 지원에서 제공하는 단기성 처방을 연장하며 국제개발의 연속성을 유도하여 평화구축의 사회적 공고화 노력을 강화하는 이점이 있다.

단기 중심의 인도적 지원과 중장기성 개발협력이 평화구축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평화조건(peace conditionality)’이라는 원조조건이 두 국제개발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Boyce 2002; 김태균, 2019b, 2020).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의 공통분모로서 평화조건은 어떤 방식의 원조가 집행되던 간에 해외원조가 분쟁지역에 유입될 때 평화구축을 위해 원조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지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UN이 파견한 지역조정관(resident coordinator: RC)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분쟁종식 이후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다양한 원조와 투자를 평화구축과 연동하여 UN RC 중심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평화조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공여국이 분쟁지역 국가의 평화구축이 아닌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전략화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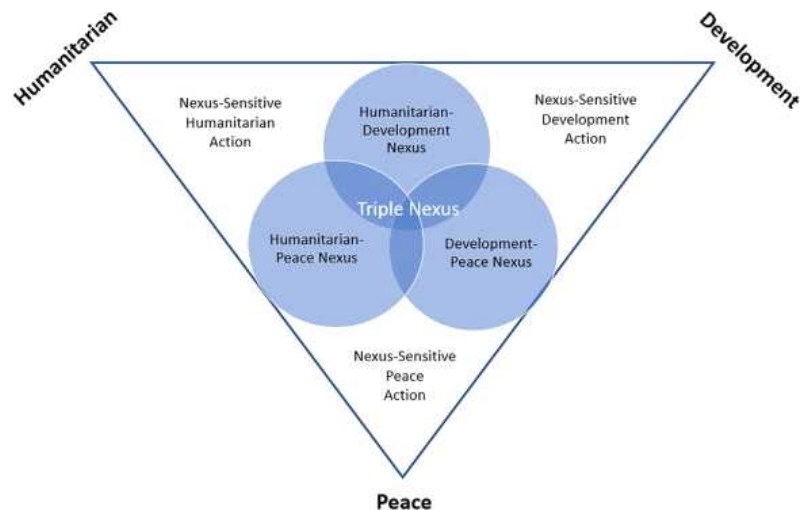
#### IV. 평화구축-국제개발 연계의 실제 적용: 글로벌 수준, 국가 수준, 한반도 로드맵

평화구축과 국제개발이 상호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준에서 실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현실 정치에서는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이 뚜렷하게 경계선을 가지고 적용되기 어려우며, 국제개발의 두 가지 전략이 상호 중첩되거나 경계선이 애매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평화구축-국제개발 연계의 실제 사례는 크게 글로벌 수준에서의 HDP Nexus,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대표적인 일본의 평화구축 추진체제도, 그리고 한반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의 총체적 접근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앞서 설명했듯이, 2018년 세계은행과 UN은 인도주의-발전-평화의 삼각(triple) 연계를 국제사회에 선포하고 인도주의와 발전, 발전과 평화, 평화와 인도주의 등과 같이 각각의 이중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최종적으로는 세 가지 목표가 교차하는 교집합에서 삼각연계인 HDP Nexus가 구축된다([그림 3] 참조). HDP Nexus는 코피 아난이 강력하게 피력했던 발전과 평화, 그리고 인권 간의 긴밀한 연계성을 구체적인 패러다임으로 반영한 결과라 평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인도적 지원은 단기성, 그리고 개발협력은 중장기성 전략이라고 알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고 인도적 지원과 발전에 해당하는 개발협력 간의 관계가 반드시 전후 순서에 의해서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HDP Nexus가 제시하고 있다(Howe, 2019). 발전과 평화가 연결되는 공간에서는 전형적인 평화구축을 위한 개발협력이 적용되는 사례가 되고, 인도주의와 평화가 만나는 공간에서는 평화구축을 위한 단기적인 인도적 지원이 적용되는 사례이며, 인도주의와 발전이 교차되는 공간은 긴급사태에 대응하는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이 동시에 적용 가능한 경우이고, 이러한 세 가지 목표가 모두 중첩되는 공간에서는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 평화구축이 공존하는 프레임워크 구축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HDP Nexus는 글로벌 수준에서 만들어진 이론적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지역 단위, 그리고 개별 국가 단위로 분석 수준을 낮출 경우 보다 구체적인 평화구축-국제개발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지역별 내지 국별 환경과 맥락에 맞게 연계성이 재구성될 것이다.

[그림 3] 삼각(triple) 넥서스 프레임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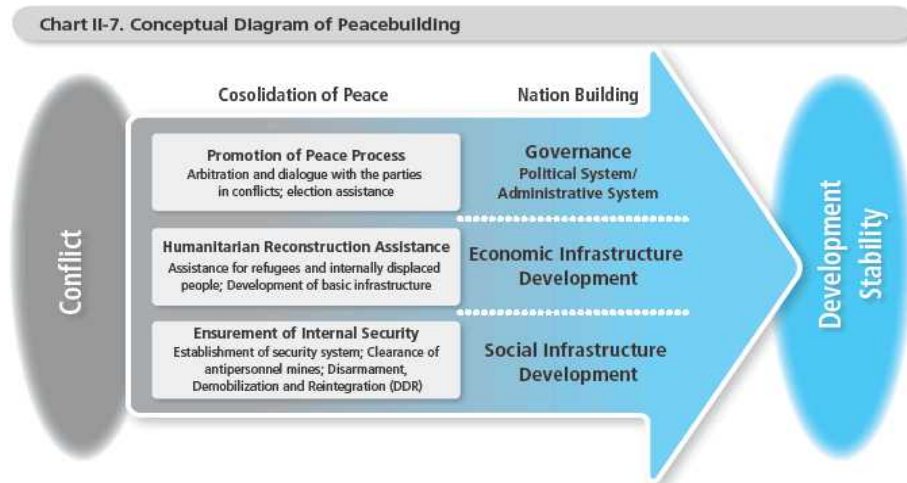
자료: Howe (2019: 5).



국별 수준으로 분석 수준을 조정해보면, 대부분의 OECD DAC 회원국들은 평화구축에 관한 원칙과 ODA를 통한 평화구축 전략을 준비하는 평화구축-국제개발 연계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DAC 회원국 가운데 일본의 평화구축 이행 로드맵이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평화구축 프로세스와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는 모범적인 사례 중 하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사례를 간단히 소개한다. 일본의 평화구축 로드맵은 외무성과 외무성 산하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가 동시에 산출한 결과로서 갈등단계에서 시작해서 개발과 안정 단계로 이행하는 목표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4] 참조). 일본식 로드맵은 분쟁에서 평화를 공고하게 안착시키는 초기 단계로 이행, 그리고 국가건설 단계에서 다양한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경제사회발전과 사회안정이 일정 정도 보장되는 전형적인 평화구축과 국제개발의 연계 사례이다(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09).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에 투입되는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은 모두 일본정부의 ODA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특징이 있다. 초기 단계인 평화의 공고화 과정에서는 중재와 협의를 통해 분쟁당사자 간의 평화로운 해법을 찾으며

선거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난민과 지역 주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을 신속히 전달하며, 군축·동원해제·재통합(Disarmament,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 DDR)을 통해 전환기 정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후기 단계에서는 정치시스템과 행정시스템 개혁을 통한 거버넌스 개선, 경제 인프라 개발협력 프로젝트 기획, 그리고 사회 인프라 개발협력 프로젝트까지 시행함으로써 본격적인 중장기 개발협력 사업이 평화구축 프로세스의 후반부와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그림 4] 일본의 평화구축 이행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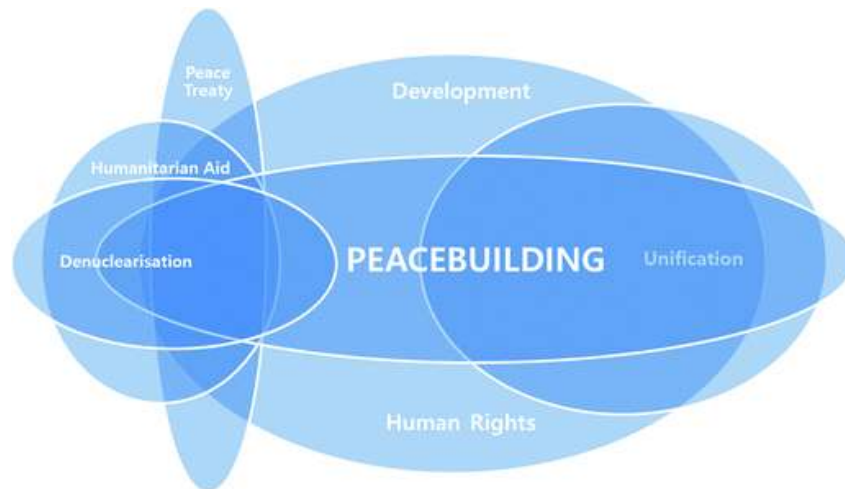
자료: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2009).

글로벌 수준에서의 HDP Nexus와 국가 수준에서의 일본 평화구축 로드맵과 달리, 한국과 북한이 대치하면서 공존하고 있는 한반도의 특수성에 평화구축과 국제개발의 연계성을 적용하면 어떤 공식의 로드맵이 구성될 수 있는지는 정치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보다 기존 연구에서 밝힌 핵심 사항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한반도 평화구축 프로세스에 관한 예견적 진단을 제시한다.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물은 크게 로드맵을 평화구축 프로세스에 집중한 연구(Kim 2016)와 한반도에 HDP Nexus를 적용한 연구(문경연, 2019)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림 5]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

자료: Kim (2016: 493).

첫째, [그림 5]가 보여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로드맵은 평화구축과 국제개발을 연동시키는 전형적인 공식에 입각해서 한반도에 평화구축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평화협정(peace treaty) 체결이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이 나누어지는 분수령이 되어 평화협정 이전을 1차 단계인 비핵화와 대북제재로 정의하고 평화협정 이후를 2차 단계로 실질적인 평화구축 단계로 정의하고 있다(Kim, 2016). 1차 단계에서는 평화협정 이전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인도적 지원을 통해 한반도 평화구축의 가능성을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양상을 예측할 수 있다. Kim Dong Jin (2016)에 따르면, 2차 단계의 핵심 목표는 평화구축이며 이를 위해 개발협력 프로젝트와 인권중심 접근법이 적극적으로 동원되어 최종적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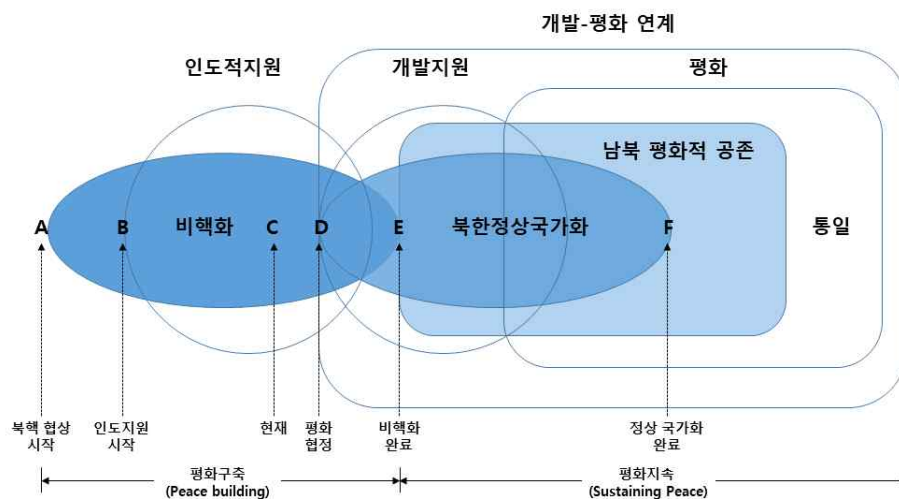


평화구축이 남북한 통일으로 귀결되는 로드맵이 2차 단계의 결론이다.

[그림 6] 북한 인도지원-개발-평화 트리플 넥서스(Triple Nexus)

자료: 문경연(2019).

한반도 평화구축 프로세스의 두 번째 모델은 문경연(2019)이 Kim Dong Jin (2016)의 모델을 토대로 HDP



Nexus 적용을 위하여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그리고 평화구축과 평화지속(sustaining peace)을 복합적으로 연계시킨 매우 정교한 로드맵으로 발전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 번째 모델과 동일하게 문경연의 모델도 평화협정 시기(D)가 광의의 평화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수령으로 간주하고 있다. 평화협정 전 단계에서는 비핵화 조건에 준하는 인도적 지원이 대북지원의 주류로 활용되는 한편, 평화협정 이후에는 개발과 평화가 적극적으로 연계되어 북한이 정상국가로 재건되고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이 가능해 질 수 있도록 평화구축과 국제개발의 연계가 주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역시 이 모델도 최종 목표는 한반도 통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강조하는 인도주의-발전-평화 연계를 한반도에 투영하여 글로벌 수준의 패러다임이 한반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단계별 결합과 그 결합이 어느 정도까지 참여 주체들을 포용적으로 흡수하는 원동력이 되는가에 대한 예견적 로드맵을 구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중략)

☐ 일정별 추진 사항

| 일 정        | 추진 내용           |
|------------|-----------------|
| 2020년 3월   | 연구 개시           |
| 2020년 3~4월 | 참여 연구원 별 소주제 확정 |

| 일 정                    | 추진 내용         |
|------------------------|---------------|
| 2020년 5~6월             | 자료 조사         |
| 2020년 7~11월            | 초고 작성         |
| 2020년 12월~<br>2021년 1월 | 초고 수정 및 원고 완성 |

☐ 참여 인력

○ 책임자

| 성 명     | 대 학      | 학 과  | 직 급              |
|---------|----------|------|------------------|
| 김 범 수   | 자유전공학부   |      | 교수               |
| 연구소(원)  | 구 내 전 화  | 휴대전화 | 이메일              |
| 통일평화연구원 | 880-4290 |      | bramhs@snu.ac.kr |

○ 주요 참여 인력

| 성 명 | 소 속         | 직 급        | 이 메 일                                                          |
|-----|-------------|------------|----------------------------------------------------------------|
| 김성철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교수         | <a href="mailto:kim239@snu.ac.kr">kim239@snu.ac.kr</a>         |
| 김태균 | 서울대 국제대학원   | 교수         | <a href="mailto:oxonian07@snu.ac.kr">oxonian07@snu.ac.kr</a>   |
| 박성우 |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 교수         | <a href="mailto:swplato@snu.ac.kr">swplato@snu.ac.kr</a>       |
| 신성호 | 서울대 국제대학원   | 교수         | <a href="mailto:ssheen@snu.ac.kr">ssheen@snu.ac.kr</a>         |
| 전재성 |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 교수         | <a href="mailto:cschun@snu.ac.kr">cschun@snu.ac.kr</a>         |
| 구민교 | 서울대 행정대학원   | 교수         | <a href="mailto:mgkoo@snu.ac.kr">mgkoo@snu.ac.kr</a>           |
| 홍종호 | 서울대 환경대학원   | 교수         | <a href="mailto:hongjongho@snu.ac.kr">hongjongho@snu.ac.kr</a> |
| 황승식 | 서울대 보건대학원   | 부교수        | <a href="mailto:cyberdoc@snu.ac.kr">cyberdoc@snu.ac.kr</a>     |
| 전소연 |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 석사과정<br>학생 | <a href="mailto:syjeon821@naver.com">syjeon821@naver.com</a>   |

### 3. 사업 성과

#### □ 사업 성과 (구체적 내용 기술)

- 통일기반구축 연합학술대회 라운드테이블 발표
  - 일시: 2020년 11월 27일(금) 13:00~15:00
  - 주제: 서울대 평화학 정립을 위한 발전 방안 논의
  - 발표 및 토론: 참여 연구진 전원 발표 및 토론

#### □ 관련분야 기여도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세계적 수준의 평화학 연구·교육 기관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
  - 세계적 수준의 평화학 연구와 교육의 시너지 창출에 기여
  - 한반도 통일과 인류의 지속적 평화에 기여하는 실천적 인재 및 학문후속 세대 양성에 기여
- 평화학에 대한 학문적 저변 확장과 이를 위한 서울대학교 교내의 학술적

### 공론장 및 학술네트워크 확대 효과 창출

- 평화학에 대한 국내 학계 관심을 고취시키고, 특히 서울대학교 교내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평화학 요소들을 엮어냄으로써 서울대학교의 평화 연구와 교육 역량 증진과 저변 확대에 기여
- 한국 학계에 독립학문으로 정립되지 못한 평화학을 이론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향후 한국 학계에 평화학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

## 4. 예산

##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 사업평가

#### ○ 사업의 적절성

-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기존 전통 안보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신안보(emerging security) 위협이 부상함에 따라 평화문제 또한 기존의 국제정치적, 군사적 관점에서 벗어나 융합적, 초학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사업은 평화 문제에 대해 융합적, 초학제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기존 전통 안보 패러다임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평화학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함
- 특히 서울대학교 기 개설 교과목 가운데 융합적, 초학제적 관점에서 평화 문제에 접근하는 교과목이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교과서 출판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의 평화학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융합적 성격의 평화학개론 교과목 개설과 평화학 연계 전공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평가함

#### ○ 사업의 효율성

- 서울대학교 7개 기관(자유전공학부, 정치외교학부, 통일평화연구원, 4개 전문대학원)에 소속된 9명의 현직 교수들이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 사업은 서울대학교 내에서 평화학 연구 활성화뿐만 아니라 학내 융합 연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함

#### ○ 사업의 영향력

- 본 사업은 서울대학교가 세계적 수준의 평화학 연구·교육 기관으로 발돋움하

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평화학에 대한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관심과 인식을 증대하는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함

○ 사업의 발전가능성

- 본 사업의 결과물은 2021년 중으로 책으로 출판될 예정이며 「평화학 개론」 교과목이 개설될 경우 수업 교재로 활용될 예정임
- 중장기적으로 본 사업을 계기로 함께 모인 연구진을 중심으로 융합적 성격의 ‘평화학’ 연계전공 개설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미흡한 점(한계)

- 코로나 유행으로 참여 연구진들이 오프라인에 함께 모여 연구의 방향과 교과서 내용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음
- 실제로 몇 차례 회의 일정을 잡았으나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회의를 수차례 취소한 바 있음
- 코로나 유행이 안정화된 이후 전체적인 주제와 각 장별 주제 조정을 위한 회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 개선(보완)할 점

- 초고 완성 이후 각 개별 장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 수정이 필요함
- 또한 교과서로서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 각 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정하여 완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향후 계획

○ 교과서 출판

- 사업 결과물을 모아 2021년 중 『평화학 개론』의 제목으로 통일평화연구원 에서 발간하는 평화학총서로 출판할 예정이며 향후 「평화학 개론」 교과목이 개설될 경우 수업 교재로 활용할 예정임
- 중장기적으로는 서울대학교의 평화학 저변을 확산하고 이를 교육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이번 연구에 참여하신 연구진을 중심으로 ‘평화학’ 연계전공 설치를 준비할 계획임

## 6. 성과 관련 지표

## □ 대표 사업 실적

### ○ 『평화학 개론』 교과서 출판

- 사업 결과물을 편집하여 2021년 중 『평화학 개론』의 제목으로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평화학총서로 출판할 예정이며 향후 「평화학 개론」 교과목이 개설될 경우 수업 교재로 활용할 예정임

## □ 성과 자율 지표

### ○ 평화학 총서 출판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 결과물을 2021년 중 교과서로 출판할 예정